#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계획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2020.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 Contents

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개 ····· 1

Ⅱ. 녹색자금 운용 · 관리 개요 ····· 5

Ⅲ.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 방향 ····· 9

Ⅳ.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주요 변경사항 ···· 17

Ⅴ.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안내 ····· 25

1. 공모 총괄 ····· 26

2.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외) ····· 29

3.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내) ····· 61

4.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91

<참 고> ····· 115

※ <참고자료> 추후 별첨(20년 7월 10일경)

1.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2. 녹색자금 관리 규정

3. 녹색자금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4. 2019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우수사례

# I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개

# 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 소개

## 1 설립목적

국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와 산림복지 산업화 도모

## 2 연 혁

○ 2015. 3. 27.「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근거 마련(제49조)

○ 2016. 4.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포괄 승계(「산림복지법」 부칙 제4조)

○ 2016. 7. 3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사업단'을 포괄 승계(부칙 제2조)

○ 2017. 2.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8. 2. 6.「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정

## 3 주요 기능

○ **(녹색자금운용)**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녹색자금) 시행

○ **(시설 조성·운영)**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및 서비스 제공

○ **(교육·치유)** 산림교육·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 **(전문업 등록)**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및 교육

○ **(전문가 관리)**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

○ **(교류·협력)**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 **(조사·연구)** 산림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소외계층지원)** 산림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4 진흥원 주요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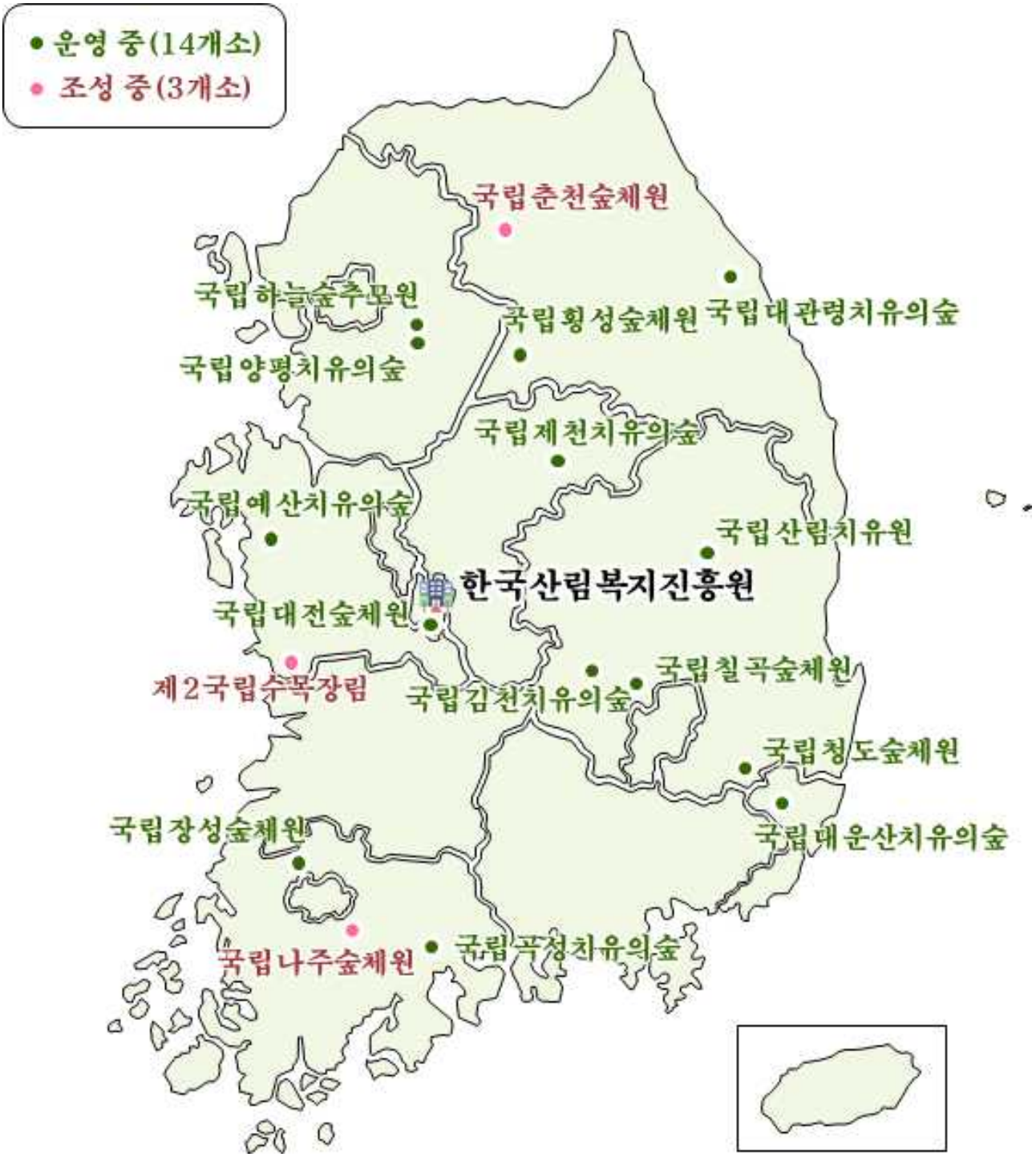
운영 중(14개소)
조성 중(3개소)
국립춘천숲체원
국립하늘숲추모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제천치유의숲
국립예산치유의숲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
제2국립수목장림
국립칠곡숲체원
국립김천치유의숲
국립청도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국립나주숲체원
국립곡성치유의숲

Ⅱ

# 녹색자금 운용·관리 개요

# Ⅱ 녹색자금 운용 · 관리 개요

## 1 녹색자금 설치근거 및 목적

○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

## 2 녹색자금 재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기부금, 후원금 등

## 3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 사업
②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③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④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⑤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⑥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⑦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⑧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⑨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다음 중 해당되는 사업

- ① 내지 ⑧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산림재해공제사업 지원, 산림재해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Ⅲ

#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 방향
##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Ⅲ 2021년도 녹색자금 지원 방향

## 1 기본 방향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복권수익금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산림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1]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계층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숲 및 나눔길 등의 녹색인프라 확충
- 청소년, 소외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산림체험활동 시설 확대 조성

## 2 세부사업별 지원 방향

###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사업(실외)

○ **(사업목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내 수목식재 등 숲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요구사항)** 사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

- 인근 도시숲, 공원 등의 접근성, 복지시설의 총면적 대비 녹지면적 비율
- 진흥원의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대상지 여건 및 시설의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확보
- 사업신청자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은 녹색자금 공모사업 취지 및 공모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광역시·도에 적극 협조

1) 보훈·유공자, 여성, 장애인, 노인, 영아 , 청소년,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 **(사업대상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실외 공간

- 지상녹화의 경우 대상 토지가 숲 조성에 적합해야 하며, 농지 등 전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
- 옥상녹화의 경우 사업제안 전 구조안전용역(식재 가능한 토심 제시)을 실시하여 옥상녹화 가능 여부에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제출

> **※ 식재 가능한 토심**
>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 **(조성방향)** 향토수종 중심의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조성

- 고가(高價)의 큰나무(근원직경 25cm이상) 식재는 지양하고, 향토수종 위주로 숲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되 대상지의 전체면적 대비 식재면적은 70% 이상 권장
- 공사원가 대비 식재·기반공사비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하되 교목 수종 위주로 하고 조경수종은 지양하며, 초화류·지피식물(잔디 등)은 최소화

○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여 자연성을 유지

- 공사원가 대비 시설물공사비의 비율은 15% 내외로 하여 그늘목 아래 목재의자, 평상 등을 설치 가능
- 산책로 조성은 자연친화적이며 식재공간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시설 시공(휠체어를 탄 노약자가 자력 이동 가능한 경사도에 설치)
- **지압로, 운동기구, 수경시설, 조경석 쌓기 등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설치 지양**
- **기반조성을 위한 시멘트 철거, 방수처리 등의 비용은 반드시 자부담**

○ **(사후관리 등)** 나눔숲 조성 후 활용 및 사후관리계획 구체적 수립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 후 활용 및 5년간의 사후 관리계획 제출
-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요청
- 홍보표지판은 총사업비 2%이내 설치하되, 조성지 환경에 맞게 반영구적, 친환경적 재료사용

##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사업(실내)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실내(천장·벽면) 목재 시공 및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면역력 증강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

○ **(요구사항)** 사업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

- 조성대상공간의 현재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애로사항, 건강 및 환경 문제 등을 제출
- 조성대상공간의 이용 현황을 계량화한 데이터(등록자, 회원 등)
- **대상공간의 공사 시 대체 공간 확보 계획 제시(필수)**
- 진흥원의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대상지 여건 및 시설의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확보

○ **(사업대상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실내 공간

- 개인 및 소규모 이용자 중심의 사무실, 원장실 등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
- 임대 및 개인소유의 건물 제외
- 해당 대상지 건물이 공모일 기준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은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준공일(사용승인일)이 2010년 7월 이전인 기관**

○ **(조성방향)**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목재환경 조성

- 내부공간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국산목재 활용
- 합판적용 디자인을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산 합판목재 사용
- 장애인 핸드레일, 목재교구 등 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구조물 설치
- 루바시공시 목재특성(수종, 문양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설계하여 단조로움 예방

○ **(시설물 설치)** 이용 대상의 특성 및 공간의 용도를 반영하여 목재 이용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시설물 설치

-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무장애시설 및 영유아를 위한 목재가구 등을 설치하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
- 시설물의 설치 규모는 목재의 긍정적 효과 및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 **(사후관리 등)** 나눔숲 조성 후 활용 및 사후관리계획 구체적 수립

- 전담 관리인원 지정 및 유지관리 비용 책정, 전문기관(목재문화진흥회)과 협력체계 구축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 후 활용 및 5년간의 사후 관리계획 제출

## ❑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 **(사업목적)**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활동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요구사항)** 사업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 무장애나눔길 조성 필요성, 수요현황
- 총 사업비의 40%이상의 자부담(지방비) 확보여부
- 사업신청 주체인 광역시·도에서 자체심사 및 진흥원의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대상지 여건 및 녹지현황을 검토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확보
- 녹색자금 총 지원액(자부담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별(2~3년) 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본구상(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광역시·도, 시·군·구,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사업대상지)

① 공통사항

- 가급적 급경사지가 아니며, 시설에 따른 산림 훼손이 적은 곳
- 보행약자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주차장 및 대중교통 등 교통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곳
- 지반이 안정되고 낙석의 위험성이 없는 곳
-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상지 선정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곳

②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

-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

○ **(조성방향)**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全구간 목재데크 시공은 지양

- 나눔길 조성 시 사용되는 목재는 가급적 국산목재를 활용
- 기존 숲길과의 연계성·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절·성토량이 최소화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예정노선 구획
- 예정노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갈지(之)자 노선은 지양
- **보행약자의 편익성 증진을 위해 유효폭 확보 및 최대 종단경사 8% 이하 유지**
- 안전난간, 유효폭 확보 등 이용객의 안전관리 사항 고려하여 시공
- **기반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은 반드시 자부담**

○ **(시설물 설치)** 사회적 배려계층을 고려하여 무장애시설(UD*, BF**) 반영

-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 설명회에 사업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
- 편익시설의 설치 규모는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반영

* **UD(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 어린이·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어 지는 환경

○ **(사후관리 등)** 나눔길 조성 후 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 구체적 수립

- 무장애나눔길 조성 후 활용 및 5년간의 사후 관리계획 제출
-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요청
- 홍보표지판 또는 안내판은 총사업비 1%이내 설치하되, 조성지 환경에 맞게 반영구적, 친환경적 재료사용

# Ⅳ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주요 변경사항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

# Ⅳ 2021년도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주요 변경사항

## 1 공통사항

| 구분 | '20년도 공모사업 | '21년도 공모사업 |
|---|---|---|
| 공통사항 | ㅇ **사업분야명**<br>- 나눔숲 조성사업 | ㅇ **사업분야명**<br>-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
| | ㅇ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br>- 사전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사업 선정<br>- 응모자격 미비 및 사업신청서 등의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br>-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ㅇ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br>- 사전심사위원의 현장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사업 선정<br>* 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적부 판단 후 사전심사위원의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발표심사 절차는 삭제<br>- ( 좌 동 )<br>- ( 좌 동 ) |
| | ㅇ **응모제한**<br>-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br>-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또는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br>- 국회 ·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br>- 최근 3년 이내 녹색자금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단체<br>- 3년('17~'19년) 연속 지원된 사업일 경우, '18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인 사업<br>- ( 신 설 ) | ㅇ **응모제한**<br>- ( 좌 동 )<br>- ( 좌 동 )<br>- ( 좌 동 )<br>- ( 좌 동 )<br>- 평가결과는 가감점 사항으로 항목 조정하고, 3년 연속 지원 사업에 대한 응모제한 사항 삭제<br>- '20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관 · 단체는 '21년도 공모사업 지원 불가 |
| | ㅇ **가점 및 감점**<br>- '19년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기관 · 단체인 경우, 3점 감점 조치<br>- ( 신 설 )<br>- '18년도 평가결과가 각 사업별 1위~3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3점 가점 부여<br>- ( 신 설 ) | ㅇ **가점 및 감점**<br>- 감점 사항에서 지원불가 사항으로 항목 조정<br>- '19년도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시·군·구)는 3점 감점 부여<br>- '19년도 평가결과가 각 사업별 1위~3위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시·군·구)는 3점 가점 부여<br>-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탁월' 등급은 2점 가점,'미흡' 등급은 2점 감점 부여 (사업시행기관별 평균점수에 따른등급으로 적용하며, '우수' 및 '보통' 등급은가감점 미부여) |

## 2 복지시설나눔숲(실외)

| 구 분 | '20년도 공모사업 | '21년도 공모사업 |
|---|---|---|
| 사업목적 |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수목식재 등 숲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br>- 옥상녹화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나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의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 좌 동 ) |
| 총사업비 | ○ 3,670백만원 | ○ 4,590백만원 (증 920백만원) |
| 지원규모 |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최대 200백만원<br>-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 ( 좌 동 ) |
| 지원조건 | ○ 녹색자금 100%(자부담 없음) | ○ ( 좌 동 ) |
| 조성대상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토지 및 건물<br>○ ( 신 설 )<br>○ ( 신 설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토지 및 건물<br>○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토지 및 건물<br>○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함 |
| 사업신청서 작성자 | ○ 사회복지시설<br>-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br>-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 사업시행자 | ○ 시·도(시·군·구)<br>-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시행(사회복지시설로 사업비 교부X) | ○ ( 좌 동 )<br>-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시행(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사업비 교부X) |
| 응모절차 | ○ ①신청서 작성(사회복지시설) ⇒ ②신청서 제출(사회복지시설→시·군·구→시·도) ⇒ ③자체심사(시·도) ⇒ ④우선순위 결정(시·도) ⇒ ⑤신청서 최종 제출(시·도→진흥원)<br>-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br>- 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응모가 불가하며, 시·도별로 최대 10개소 이내로 신청 | ○ ①신청서 작성(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 ②신청서제출(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시·군·구→시·도) ⇒③ 신청서 최종 제출(시·도→진흥원)<br>-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br>- 시·도를 거쳐 응모하여야 하며, 개소 수 제한 없이 응모 가능(시·도 자체심사 절차 생략) |
| 심사절차 | ○ 사전심사위원회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 ○ 진흥원 서류검토(적부판단), 현장심사<br>* 사전심사위원의 서류 및 발표심사 절차 삭제 |
| 응모제한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과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사업을 동시에 모두 신청한 사회복지시설<br>-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탈락처리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과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사업을 동시에 모두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br>-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탈락처리 |

# 3 복지시설나눔숲(실내)

| 구 분 | '20년도 공모사업 | '21년도 공모사업 |
|---|---|---|
| 사 업 목 적 | ○ 사회복지시설의 실내에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면역력 증강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 | ○ ( 좌 동 ) |
| 총 사 업 비 | ○ 2,750백만원 | ○ 3,570백만원 (증 820백만원) |
| 지 원 규 모 |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최대 200백만원<br>-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 ( 좌 동 ) |
| 지 원 조 건 | ○ 녹색자금 100%(자부담 없음) | ○ ( 좌 동 ) |
| 조성대상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물<br>○ (신 설) | ○ ( 좌 동 )<br>○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건물 |
| 사업신청서 작 성 자 | ○ 사회복지시설<br>-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br>-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 사업시행자 | ○ 목재문화진흥회<br>- 사업이 선정된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사업 시행(사회복지시설로 사업비 교부X) | ○ 목재문화진흥회<br>- 사업이 선정된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사업 시행(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사업비 교부X) |
| 응 모 절 차 및 응모개소 수 | ○ ①신청서 작성(사회복지시설) ⇒ ②신청서 제출(사회복지시설→진흥원)<br>-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흥원으로 직접 응모해야 하며,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 ①신청서 작성(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 ②신청서제출(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 목재문화진흥회) ⇒ ③신청서 최종 제출(목재문화진흥회 → 진흥원)<br>-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에서 목재문화진흥회로 응모해야 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진흥원으로 제출 |
| 심 사 절 차 | ○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 ○ 진흥원 서류검토, 현장심사<br>* 발표심사 절차 삭제 |
| 지 원 범 위 |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부<br>- 천장·벽면·바닥 시공 지원 |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건물 내부<br>- 천장·벽면 시공 지원 및 목재가구 지원<br>*바닥시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목재가구 추가 |
| 응 모 제 한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과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사업을 동시에 모두 신청한 사회복지시설<br>-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탈락처리<br>○ 사업대상 건물이 공모일 기준 준공된지 10년 이상인 건물(준공일이 2009년 7월 이전) | ○ ( 좌 동 )<br>○ 사업대상 건물이 공모일 기준 준공된지 10년 이상인 건물(준공일이 2010년 7월 이전) |

# 4 무장애나눔길

| 구 분 | '20년도 공모사업 | '21년도 공모사업 |
|---|---|---|
| 사 업 목 적 | ○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숲길을 조성하여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 | ○ ( 좌 동 ) |
| 총 사 업 비 | ○ 7,000백만원 | ○ 7,700백만원 (700백만원 증) |
| 지 원 규 모 | ○ 개소당 600백만원 내외, 최대 2,000백만원<br>- 녹색자금 총 지원액이 1,0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년으로 나눠 연차사업으로 지원 | ○ ( 좌 동 ) |
| 지 원 조 건 | ○ 총 사업비의 40% 이상 사업시행자 자부담<br>- 녹색자금 최대 60% 지원 | ○ ( 좌 동 ) |
| 조성대상지 | ○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군·구)인 경우<br>-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br>-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br>○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인 경우<br>-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br>- (신 설)<br>○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br>-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br>-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 ( 좌 동 )<br>○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인 경우<br>-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br>-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br>○ ( 좌 동 ) |
| 사업신청서 작 성 자 | ○ 시·도(시·군·구)<br>○ 공익법인<br>○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 ○ ( 좌 동 )<br>○ ( 좌 동 )<br>○ ( 좌 동 ) |

| 구 분 | '20년도 공모사업 | '21년도 공모사업 |
|---|---|---|
| 사업시행자 | ○ 시·도(시·군·구)<br>- 시·도(시·군·구)로 사업비 교부 및 집행<br>○ 공익법인<br>- 해당 공익법인으로 사업비 교부 및 집행<br>○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br>-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 ( 좌 동 )<br><br>○ ( 좌 동 )<br><br>○ ( 좌 동 ) |
| 응모절차 및 개소수 | ○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군·구)인 경우<br>- ①신청서 작성(시·도 또는 시·군·구) ⇒ ②신청서 제출(시·군·구→시·도) ⇒ ③자체심사(시·도) ⇒ ④우선순위 결정(시·도) ⇒ ⑤신청서 최종 제출(시·도→진흥원)<br>-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br>- 시·도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응모가 불가하며, 시·도별로 최대 3개소 이내로 신청<br>- ( 신 설 )<br><br>○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 또는 서비스제공자인 경우<br>- ①신청서 작성 ⇒ ②신청서 제출(진흥원으로 직접제출)<br>- 공익법인, 서비스제공자별로 각 1개소만 신청 가능하며,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군·구)인 경우<br>- ( 좌 동 )<br><br>- ( 좌 동 )<br><br>- 시·도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응모가 불가하며, 시·도별로 최대 4개소 이내로 신청<br>- 단, 시·군·구 응모사업이 4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심사 필수 실시(총 응모사업이 4개소 이하의 경우 자체심사 절차 생략)<br><br>○ ( 좌 동 ) |
| 심사절차 | ○ 서류검토 ⇒ 현장심사<br>- 진흥원으로 신청된 응모사업지 전체 현장심사 실시 | ○ ( 좌 동 ) |

# V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안내
#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

# V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안내

## 1 공모 총괄

### 1.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1년 1월 ~ ’21년 12월

○ 총 사업비 : 15,860백만원

○ 모집방식 : 일반공모

○ 주관기관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 2. 공모기간 및 접수기간

| 사업명 | 진흥원<br>공모기간 | 시·도별<br>접수기간 | 통합관리시스템<br>입력기간 |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 | ’20. 7. 6.(월) ~<br>7. 31.(금) 18:00 | 해당 시도별<br>공모일정<br>반드시 확인 | ’20. 7. 20.(월) ~<br>7. 31.(금) 18:00 |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 | | | |
| 무장애나눔길 조성 | | | |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마감기한까지 시스템 입력 및 신청서 제출·접수

- 마감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URL 주소 : gfund.fowi.or.kr

### 3. 공모안내

○ 녹색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gfund.fowi.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www.fowi.or.kr)

## 4. 사업분야별 응모자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야 | 응모자격 및 신청서 작성 | 사업시행자 | 사업비 | 사업당 지원액 |
|---|---|---|---|---|
| 합 계 | - | - | 15,860 | - |
| 1.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 (녹색자금 100% 보조) | - | - | 8,160 | - |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br>○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실외에 숲 조성을 통한 환경개선 | 사회복지시설[1] 의료기관[2] (시·도(시·군·구)) | 시·도 (시·군·구) | 4,590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최대 200백만원까지 |
| • 복지시설나눔숲(실내)<br>○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실내에 목재를 이용한 거주환경 개선 | 사회복지시설[1] 의료기관[2] | 목재문화진흥회 | 3,570 |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 최대 200백만원까지 |
| 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 - | - | 7,700 | - |
|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br>○ 보행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나눔길 조성 | 시·도(시·군·구), 공익법인[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4] | | 7,700 | 개소당 600백만원 내외, 최대 2,000백만원까지 |

## 5.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심사개요

-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위원'을 구성 및 운영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충실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현장심사

-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사업비 최종 결정

○ 선정방법 및 사업비 조정

- 진흥원의 서류검토, 사전심사위원의 현장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응모자격 관련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 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및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1) 시설 소유·운영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
2) 시설 소유·운영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공모 마감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 함)

## 6. 응모방법

○ 공문(전자문서) 제출 및「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 후 마감기한까지 온라인 접수

※ 마감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입력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불안정 및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접수 필요

## 7. 선정결과 통보

○ '20년 10월경 진흥원 홈페이지(www.fowi.or.kr)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 예정

※ 심사일정에 따라 선정결과 공고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8.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에 제안기관·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거나, 제안기관·단체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이 첨부되어야 유효함

○ 응모서류(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하며, 응모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시행자는「녹색자금 관리 규정」및「녹색자금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20년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취소하는 경우 '21년도 공모사업 지원이 불가하며, 진흥원은 차순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불안정 및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접수해야 함

○ 나눔숲·나눔길 공모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흥원 녹색자금관리팀(042-719-4081~4)으로 연락

# 2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외)

## 1.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수목식재 등 숲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옥상을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상 하중 등을 확인하여 옥상녹화 가능 여부가 포함된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함)

- 구조안전진단보고서는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급된 건만 유효함

## 2. 사업내용

○ 교목·관목 등의 수목식재를 통한 녹지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옥상녹화 포함)

## 3. 총사업비 : 4,590백만원

## 4.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녹색자금 지원액 | 응모 개소수 | 비 고 |
|---|---|---|---|
| 녹색자금 100%보조 (자부담 없음) | 개소당 1억원 내외 최대 2억원까지 | 제한없음 | 복지시설나눔숲(실내)와 동시 신청(응모) 불가 |

※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2개 사업 중 택1 신청)

※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중요)** 녹색자금 지원 이후 5년 이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라 진흥원으로 반환하여야 함

## 5. 응모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6. 조성대상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토지 및 건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토지 및 건물

※ 나눔숲(실외) 조성대상 토지가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7. 신청서 제출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시스템 입력 및 최종 제출 | 사업시행자 |
|---|---|---|---|
| 사회복지시설<br>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br>→ 시·군·구→ 시·도 | 시·도 → 진흥원 | 시·도<br>(시·군·구) |

※ 제안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교부되지 않음**('진흥원 → 시·도 → 시·군·구'로 교부)

## 8. 응모 및 선정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시스템 입력 및 제출 |
|---|---|---|
|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 시·군·구 | 시·도 |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구를 통하여 시·도로 제출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을 취합하여 안내기한 내에 시·도로 제출 | 진흥원으로 총괄 사업신청서 등을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및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사항 입력·제출('20. 7. 31. 18시까지) |

⇨ ⇨ ⇩

| ⑥ 선정결과 통보 | ⑤ 지원대상 결정 | ④ 현장심사 |
|---|---|---|
| 진흥원 | 산림청 | 진흥원 |
| 선정결과 통보<br>(진흥원 → 신청기관)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최종결정('20. 10월) | 서류검토 → 현장심사 |

⇦ ⇦

## 9. 응모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제출

※ 사업 명칭은 「○○(시·군·구)○○(시설명) 나눔숲(실외)」으로 함

○ 시·군·구 및 시·도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응모가 불가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군·구를 통해 시·도로 제출(서식은 <참고 5> 참조)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시 사업비 산출은「녹색자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과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 조견표(<참고 1>)를 참조

○ 시·도에서는 신청된 사업을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총괄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총괄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

- 녹색자금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 후 마감기한인 **'20. 7. 31.(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직인포함)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 접수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오류발생 등 접속이 어려울 있으며 마감기한 이후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사전 접수 필요

- 공문(전자문서) 제출

: 시·도에서 총괄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필수)

| 구 분 | 유 의 사 항 |
|---|---|
| 총괄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 총괄표 | 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시・도 작성) |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시설작성) |
| 복지시설신고증 |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 |
|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 관할기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 구 분 | 유 의 사 항 | 비 고 |
|---|---|---|
| 부동산등기부 등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토지 및 건물 | |
| 토지영구사용동의서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대상 토지가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 제출 | |
| 옥상녹화 조성사업 추진 동의서 | 옥상을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
| 개인정보동의서 | 담당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 | |
| 구조안전진단보고서 | 옥상을 녹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br>*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

## 10. 응모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응모가 제한 됨)

- ’20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관·단체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
-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안하는 기관·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시설투자 또는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
-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녹색자금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단체
- 사회복지시설 → 시·군·구 → 시·도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경우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의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토지 및 건물이 아닌 곳에 조성할 시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1. 가점 · 감점

| 구 분 | | 유 의 사 항 |
|---|---|---|
| 가점 | 3점 | • ’19년도 녹색자금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1~3위) |
| | 2점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탁월’ 기관 |
| 감점 | 3점 | • ’19년도 녹색자금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기관 |
| | 2점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미흡’ 기관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시행기관별 평균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적용하며, ‘우수’ 및 ‘보통’ 등급은 가감점 미부여

※ 감점 대상기관은 시·도 담당자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가점기관 <참고6,7> 참조)

## 12. 심사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혜자 접근 용이성

○ 신청사업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적합성

○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

○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및 제안면적의 적절성

○ 주변 녹지환경 조성 필요성

○ 숲 조성 이후 개방여부 및 지역주민 등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 지반안정, 배수·물길 확보 등 사업추진의 안전성

○ 사업추진의 종합적 여건(민원발생 가능성, 숲 조성을 위한 여건 등)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 사업제안서에 「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고 1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 조견표

### □ 조견표 제시 목적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의 사업제안서 작성자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사업비 산출의 용이성, 규모의 합리성 등 제공을 목적으로 함

### □ 조성면적당 예상단가

○ 지상녹화 : 조성면적 구간별 ㎡당 예상단가

| 조성면적 구간 | 예상단가 |
|---|---|
| ~ 1,000㎡ 이하 | 138,884원 |
| ~ 2,000㎡ 이하 | 94,445원 |
| ~ 3,000㎡ 이하 | 76,031원 |
| ~ 4,000㎡ 이하 | 69,729원 |
| 4,000㎡ 초과 | 50,826원 |

※ 산출예시(1,300㎡인 경우) : (1,000㎡ × 138,884원) + (300㎡ × 94,445원) = 167,217,500원

○ 옥상녹화 예상단가 : 240,000원/㎡(조성면적 400㎡ 기준 예상단가)

### □ 사업비 내역별 편성비중

○ 사업비 편성비중 참고

| 운영비 | 시설비 | | | |
|---|---|---|---|---|
| | 기본·실시설계 | 공사비 | 감리비 | 시설 부대비 |
| 3%내외 | 8% 내외 | 85% 내외 | 3% 내외 | 1% 내외 |

○ 공사원가 편성비중 참고

| 사업구분 | 식재공사비 | 기반공사비 | 시설물공사비 | 기타비용 (이윤, 부가세 등) |
|---|---|---|---|---|
| 지상녹화 | 50% 이상 | 10% 내외 | 15% 내외 | 25% 내외 |
| 옥상녹화 | 40% 이상 | 30% 내외 | 15% 내외 | 25% 내외 |

## 참고 2 엔지니어링 사업[건설부문] 대가기준 (예시)

| 요율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 3.78 | 6.16 | 3.02 | 12.96 |
| 1억원 이하 | | | 2.85 | 12.79 |
| 2억원 이하 | | | 2.26 | 12.20 |
| 3억원 이하 | | | 2.06 | 12.00 |
| 5억원 이하 | | | 1.89 | 11.83 |
| 10억원 이하 | | | 1.66 | 11.60 |
| 20억원 이하 | 3.33 | 5.47 | 1.53 | 10.33 |
| 30억원 이하 | 3.10 | 5.10 | 1.48 | 9.68 |
| 50억원 이하 | 2.82 | 4.67 | 1.45 | 8.94 |

( 이 하 생 략 )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 1. 28., 일부개정)

## 참고 3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종류

### □ 사회복지시설 종류

| 소관부처 | 시설유형 | 세부종류 | | 관련법 |
|---|---|---|---|---|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br>○ 노인의료복지시설<br>○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재가노인복지시설<br>○ 노인여가복지시설<br>○ 노인보호전문기관<br>○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에 지역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아동복지시설 | ○ 아동양육시설<br>○ 아동일시보호시설<br>○ 아동보호치료시설<br>○ 자립지원시설<br>○ 공동생활가정 | ○ 아동상담소<br>○ 아동전용시설<br>○ 지역아동센터<br>○ 아동보호전문기관<br>○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br>○ 중증장애인 거주시설<br>○ 장애영유아 거주시설<br>○ 장애인단기 거주시설<br>○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br>○ 장애인직업재활시설<br>○ 장애인의료재활시설<br>○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 어린이집 |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 정신보건시설 | ○ 정신요양시설<br>○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노숙인시설 | ○ 노숙인자활시설<br>○ 노숙인재활시설<br>○ 노숙인요양시설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br>○ 노숙인일시보호시설<br>○ 노숙인급식시설<br>○ 노숙인진료시설<br>○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자원에 관한 법률」 |
| |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 결핵·한센시설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 지역자활센터 | -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 일반지원시설<br>○ 청소년지원시설<br>○ 외국인여성지원시설<br>○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자활지원센터<br>○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가정폭력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br>○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br>○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br>○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br>○ 일시지원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 청소년복지시설 | ○ 청소년쉼터<br>○ 청소년자립지원관<br>○ 청소년치료재활센터<br>○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발행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의료시설 종류

| 시설유형 | 정의 | 세부종류 | 관련법 |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 의원<br>○ 치과의원<br>○ 한의원 | 「의료법」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 | |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 병원<br>○ 치과병원<br>○ 한방병원<br>○ 요양병원<br>○ 종합병원 | |

※ 자료출처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요양병원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참고 4 복지시설나눔숲 숲유형

| 구 분 | | 조성대상지 | 사 례 |
|---|---|---|---|
| 경계형 | 공동경계숲 | 시설 경계구역과 이웃소유자의 경계구역에 공동으로 조성될 숲. 경계선 좌우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전제로 하며, 담장은 철거하고 담장 좌우에 10~14m의 숲을 조성 | |
| | 단독경계숲 | 경계는 공동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 경계구역에만 조성 | |
| 근린녹지형 | 비탈숲 | 경계부가 비탈로 된 경우 조성하는 숲 | |
| | 야외숲 | 시설부지 안에 있는 잔존 식생지이기는 하나 소외되었던 공간을 적극 조림한 곳 | |
| | 모퉁이숲 | 시설부지 안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한 숲 | |
| | 미래숲 | 정문으로부터 본관까지 진입하는 통행로에 직선형으로 조성 | |
| | 화단숲 | 현재 조성된 화단을 폭을 넓혀 조성 | |
| 환경조절형 | 소음방지숲 | 시설주변의 소음원으로부터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 | |
| | 시각차폐숲 | 시설주변에는 이용자들의 시각을 저해하는 각종 오염원들을 차폐하기 위해 조성 | |
| | 기후조절숲 | 마당이 넓고 트여 있거나 먼지가 많은 공장지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바람과 먼지 등으로부터 시설환경 보호 | |
| | 중정원 | 시설 사이의 중앙 공간에 조성 | |
| 전문학습원 | 학습원 | 기존에 자연학습원, 재배장, 사육장, 관찰원, 실습장, 연못 등의 명칭으로 설치된 곳 주변 | |
| | 화목원 |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소형 정원으로 구성 | |
| | 향기원 | 주로 방향식물을 이용해 조성하는 숲 | |
| | 식물원 | 시설부지가 넓고 이미 부지 내에 어느 정도 숲의 형태를 갖춘 곳이 있다면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습원 겸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조성 | |
| 역사문화형 | 전통숲 | 시설의 역사와 전통이 연관된 숲 | |
| | 문화유적숲 | 주변의 문화적 특성을 숲 조성에 반영한 숲 | |

## 참고 5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제안서 양식

### □ 제안서 구성

○ 총괄 사업신청서(시·도에서 작성)

○ 사업신청 총괄표(시·도에서 작성)

○ 사업신청서(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

○ 사업제안서(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

### □ 제안서 작성 및 유의 사항

○ *'기울임'* 및 '파란색' 글씨는 작성에 관한 설명 및 예시로 작성시 삭제할 것

○ 사업신청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양식 및 작성요령 참고

○ 시·도에서는 '총괄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마감기한까지 공문(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시 파일제목은 「'21년도 녹색자금 공모 실외 나눔숲(시·도명)」으로 작성 제출

○ 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의 '녹색자금 공모'란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포함)를 첨부하여 마감기한까지 제출('20. 7. 31.(금) 18시까지)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오류발생 및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접수 필요

○ 1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사업 신청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됨(2개 사업 중 택1 신청)

## 1. 총괄 사업신청서 ※ 시·도에서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신청서(총괄)

| 기 관 명 | 시·도명 | 대 표 자 | OOO |
|---|---|---|---|
|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00개월) | | |
| 총사업비 | 0,000,000원(녹색자금) | | |
| 신청 개소수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총 00건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총괄표 ---------- 1부
2.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 ( )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2. 사업신청 총괄표 ※ 시·도에서 작성

**○○시·도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신청 총괄표**

| No. | 시설명 | 설립 유형 | 사업비 (원) | 조성 유형 | 조성면적 (㎡) | 조성단가 (원/㎡) |
|---|---|---|---|---|---|---|
| 1 | ○○○○ (시설유형) | 법인 지자체 국가 | 0,000,000 | 지상녹화 옥상녹화 | 0,000 | 0,000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합계 | | | | | | |

※ 시·도에서는 사업신청 목록을 차례로 기재
※ '시설명'란은 시설유형을 기재(<참고 3>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종류 참조)
※ '사업비'란은 시·도의 심사액을 기재하되, 반드시 신청서상의 신청 사업비를 심사액과 일치토록 조정함(진흥원은 위 '사업비'란의 금액기준으로 심사함)

## 3. 사업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 시 설 명 | OOOOO | 설립유형 | 법인·지자체·국가 | 대표자 | OOO |
| | | 시설유형 | <참고 3> | | |
| 사 업 명 | 예) ○○(시·군·구)○○(시설명) 나눔숲(실외) | | | | |
| 사업유형 및 조성면적 | 지상녹화 | 0,000 ㎡ | 숲유형 | 예) 경계형 공동경계숲<br>※ 숲유형은 <참고 4> 참조 | |
| | 옥상녹화 | 0,000 ㎡ | | | |
| 사 업 기 간 | 2021. 00. 00. ~ 2021. 00. 00.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000-000-0000 | |
| 사 업 비 | 0,000,000원(녹색자금) | | | | |
| 사업지 주소 | 지번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동 00-0번지 | | | |
| | 도로명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로 00번길 000 |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 1부
2. 관련 증빙 등 ---------- 1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4. 사업제안서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아래내용은 심사에 반영

**〔○○(시·군·구) ○○(시설명)〕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 Ⅰ. 사업계획

## 1. 사업배경

○ (조성시설에 현재의 녹지율 정도, 생활권에 녹지공간의 접근성 정도를 기재)

○ (수혜자 유형 및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재)

○ (현재의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기재)

## 2. 사업목적

○ (조성 후 시설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 목적 위주로 기재)

○

## 3. 사업비 : 0,000,000원(녹색자금)

| 구분 | 운영비 | 시설비 | | | | 합계 |
|---|---|---|---|---|---|---|
| | | 기본·실시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금액(원)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0 |
| 비중 | 00% | 00% | 00% | 00% | 00% | 00% |

<예시> 사업비 편성

| 구분 | 운영비 | 시설비 | | | | 합계 |
|---|---|---|---|---|---|---|
| | | 기본·실시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금액(원) | 2,000,000 | 8,900,000 | 90,000,000 | 2,600,000 | 800,000 | 104,300,000 |
| 비중 | (1.9%) | (8.5%) | (86.3%) | (2.5%) | (0.8%) | (100%) |

※ 운영비 : 자문위원 자문비, 사업결과보고서 인쇄비, 완공식, 주민설명회 등

## 4. 사업 대상지 현황

○ 토지 소유 현황*(편입 필지 별로 모두 작성)*

| 주 소 | 지 목 (용도지역) | 조성면적 (㎡) | 소유자 | 소유자·제안자 일치 여부 | 토지영구사용동의 여부 |
|---|---|---|---|---|---|
| 계 | | *300㎡* | | |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 | | | |

○ 숲 조성 여건

○
○
*※ 숲 조성 토지의 현황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배수시설, 콘크리트 등 포장, 산책로, 기존 수목, 시설물 등 철거 여부 및 보완조성 여부를 기재*

## 5. 조성 후 활용계획

○ 활용계획

○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종료 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이용자,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한 활용계획(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구체적 기술*

○ 나눔숲 개방 여부*(나눔숲 개방이 가능한 요일·시간대에 모두 체크(√) 표시)*

| 구분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요 일 별 | | √ | | | | | | |
| 시간별 | 6 ~ 9 시 | | | | | | | |
| | 9 ~ 14시 | | | | | | | |
| | 14~18시 | | | | | | | |
| | 18~21시 | | | | | | | |

## 6. 사후관리 계획

○
○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외) 조성 후 관리기관, 관리재원, 관리방법 등 사후관리 계획 구체적 기술*

**<참고> 녹색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완공일로부터 5년간 | • 「녹색자금의 관리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함<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br>-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수 없음 |

## 7. 복권기금(녹색자금) 홍보계획

○ 홍보계획

○
○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

○
○
* *수혜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통한 수요조사 및 지자체, 시공사, 복지시설관계자 3자 의견조정 간담회 등 기재*

## 8. 기대효과

○
○

# Ⅱ. 참고자료

## 1. 사업대상지 사진*(심사 및 선정 이후 활용이 가능토록 작성)*

| 위 치 도 | |
|---|---|

***위성지도(스카이 뷰)***

*※ 조성지 위치는 실선(적색)으로 표시*

*※ 사업대상지 인근에 소외계층시설(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사회·경제적 약자층 거주지, 기타 복지관 등) 및 거주지 등이 있을 경우 표기*

위치설명

<예 시>

| | |
|---|---|
| 위 치 도 | |
| 위치설명 | ㅇㅇㅇ**복지관 나눔숲 조성사업 신청지**<br>**(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00번지)** |

| | |
|---|---|
| ※ 전경은 가급적 대상지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br>※ 사진은 선명하게 칼라로 찍어 제출(jpg파일)<br>※ 사진용량은 장당 4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br>※ 사업구역을 실선(적색)으로 표시 | 사업대상지<br>전 경 |
| ※ 사진은 선명하게 칼라로 찍어 제출(jpg파일)<br>※ 사진용량은 장당 4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br>※ 사업구역을 실선(적색)으로 표시<br>※ 사업선정 및 조성 이후 자료로 활용가능토록 조성 전 대상지 촬영 | 사업대상지<br>근 경 |

※ 현장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진 첨부(200만화소 이상, 칼라)

## 2. 사회복지시설 현황

<table>
<tr><td>단체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6">우편번호 :　　대표전화 :　　FAX :<br>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td></tr>
<tr><td colspan="6">※ 도로명 주소로 기입</td></tr>
<tr><td>설립일<br>(설립근거)</td><td></td><td>법인허가일<br>(주무기관)</td><td></td><td>법인<br>형태</td><td colspan="2">재단(　), 사단(　)<br>특수(　), 기타(　)</td></tr>
<tr><td>연 혁</td><td colspan="2"></td><td>설립목적 및<br>주요사업분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주 요<br>임직원</td><td>직 책</td><td>성 명</td><td colspan="2">주 요 경 력</td><td>임기</td><td>기 타</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3">조직구성</td><td rowspan="2">계</td><td colspan="2">임　　원</td><td colspan="2">직원(교직원)</td><td rowspan="2">회원 (단체)</td></tr>
<tr><td>상 임</td><td>비상임</td><td>상 근</td><td>비상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무실<br>현 황</td><td colspan="6">- 면적 :　　평,<br>- 임대 또는 자가 : 임대 (　　), 자가(　　)</td></tr>
<tr><td>이용자<br>현 황</td><td colspan="6">- 수용 정원 :　명 / 수용 현원 :　명<br>- 시설 직원 :　명 / 기타이용자 :　명</td></tr>
<tr><td>외부기관<br>지적사항</td><td colspan="6">-<br>-</td></tr>
</table>

*※ 이용자 현황*

*- 공식증명서 상의 수용정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시설 특성상 별도 정원이 없는 시설은 해당사유 기재*

*- '기타이용자'는 입소자, 시설직원을 제외한 상시 주민 이용자 등을 기재*

*※ 외부기관 지적사항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기재*

## 3. 옥상녹화 사업대상지 현황*(옥상녹화의 경우 추가 기재)*

<table>
<tr><td rowspan="15">구조 안정성 기초 조사</td><td rowspan="5">건물 개요</td><td>건물명 (소유기관)</td><td colspan="2"></td><td rowspan="2">조사응답자 및 연락처</td><td>성 명 :※ 반드시기재</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2"></td><td>연락처 :※ 반드시기재</td></tr>
<tr><td>건물용도</td><td colspan="2"></td><td>준공일</td><td></td></tr>
<tr><td>층수(지하/지상)</td><td colspan="2">/</td><td>연면적</td><td>㎡</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2">천원</td><td>사업기간</td><td>2021. . ~ .</td></tr>
<tr><td rowspan="3">옥상 이용 현황</td><td>옥상면적</td><td colspan="2">㎡</td><td>기존녹화 면적</td><td>㎡</td></tr>
<tr><td>공원화 가능면적</td><td colspan="2">㎡</td><td>기존녹화면적 중 법정조경면적</td><td></td></tr>
<tr><td>예상인원 (인/일)</td><td colspan="2"></td><td>이용대상</td><td></td></tr>
<tr><td rowspan="3">건물 관리</td><td>설계도서 보유</td><td colspan="4">※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보유 여부</td></tr>
<tr><td>보수보강이력</td><td colspan="4">· 일자:<br>· 내용:</td></tr>
<tr><td>관리현황</td><td colspan="4">· 관리조직 :</td></tr>
<tr><td rowspan="3">내하중성</td><td>구조변경</td><td colspan="4">· 위치:<br>· 내용:</td></tr>
<tr><td rowspan="2">용도/위치변경</td><td>구 분</td><td>설계당시</td><td colspan="2">변경후</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기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주요부 건전성</td><td>보</td><td colspan="2"></td><td>기둥</td><td></td></tr>
<tr><td>옥상슬래브 하단상태</td><td colspan="2"></td><td>옥상상부바닥</td><td></td></tr>
<tr><td>파라펫(난간) 높이 및 상태</td><td colspan="2">· 높이 : ㎝<br>· 상태 :</td><td>기 타</td><td></td></tr>
<tr><td rowspan="3">방수 상태</td><td>방수층 종류</td><td colspan="4">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br>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br>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td></tr>
<tr><td>표면상태</td><td colspan="2"></td><td>누수현황</td><td></td></tr>
<tr><td>기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공공성 조사</td><td rowspan="2">다중 이용 가능성</td><td>접근성</td><td colspan="4">A. 양호(엘리베이터) B. 보통(계단) C. 불량</td></tr>
<tr><td>개방성</td><td colspan="4">A. 인근 주민 및 일반시민에게 개방 ( )<br>B. 예약방문자에 한해 개방 ( )<br>C. 건물 이용자에 한해 개방 ( )</td></tr>
<tr><td rowspan="4">자연 환경 조사</td><td>빌딩풍</td><td colspan="5">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td></tr>
<tr><td>일조조건</td><td colspan="5">A. 좋음 B. 그늘이 일부 생김 C. 항상 그늘짐</td></tr>
<tr><td>대기오염</td><td colspan="5">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td></tr>
<tr><td>소음</td><td colspan="5">A. 영향 큼 B. 영향 보통 C. 영향 적음</td></tr>
</table>

※ 아래의 증빙자료를 별도의 파일(양식 참조)에 저장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와 함께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제출

1-1. 복지시설신고증

1-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2. 법인설립허가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부동산등기부 등본

5. 토지영구사용동의서(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해당 법인·기관에 한하며 개인소유 토지 불가

6. 옥상녹화 조성사업 추진 동의서(옥상녹화사업에 한함)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8. 구조안전진단보고서 일체(옥상녹화사업에 한함,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증빙 예시 1>

*※ 시설신고증과 법인설립허가증 상의 법인명이 동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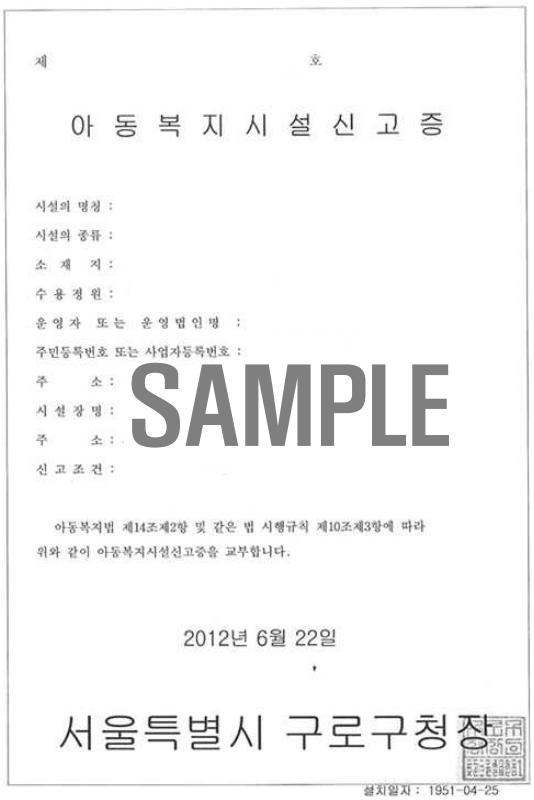

제 호

아 동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종류 :
소 재 지 :
수 용 정 원 :
운 영 자 또 는 운 영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 설 장 명 :
주 소 :
신 고 조 건 :

SAMPLE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설치일자 : 1951-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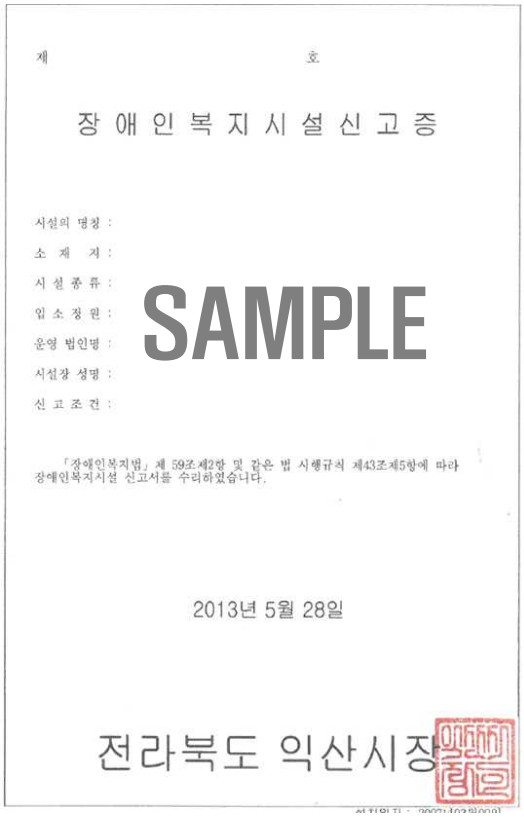

제 호

장 애 인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시 설 종 류 :
입 소 정 원 :
운영 법인명 :
시설장 성명 :
신 고 조 건 :

SAMPLE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8일

전라북도 익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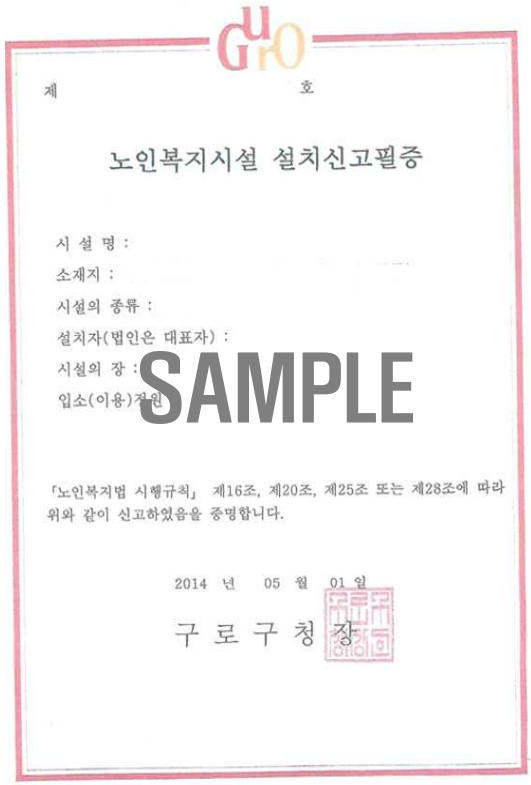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
소재지 :
시설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시설의 장 :
입소(이용)정원

SAMPL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년 05 월 01 일

구 로 구 청 장

제

사 회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사 업 종 별 :
수 용 정 원 : 명
운 영 자 또 는 운 영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 설 장 명 :
주 소 :
신 고 조 건 :

SAMPLE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증빙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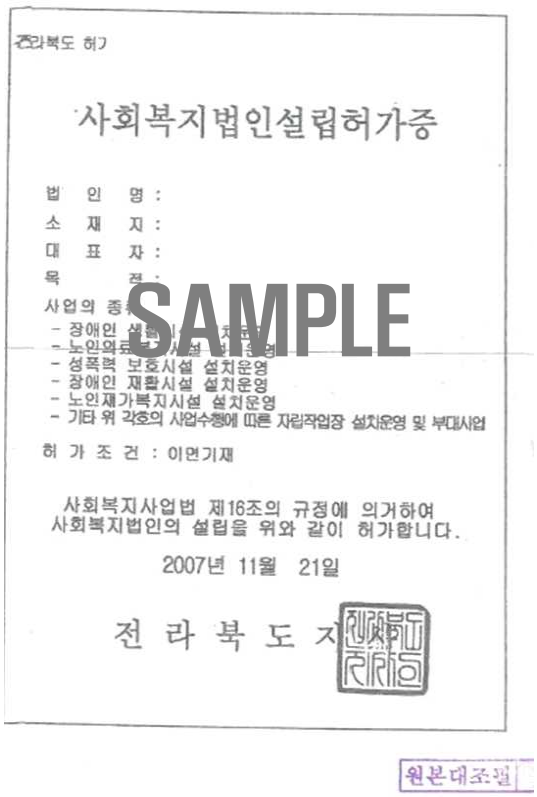

전라북도 허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목 적 :
사업의 종류 :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및 부대사업

허 가 조 건 : 이면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전 라 북 도 지

SAMPLE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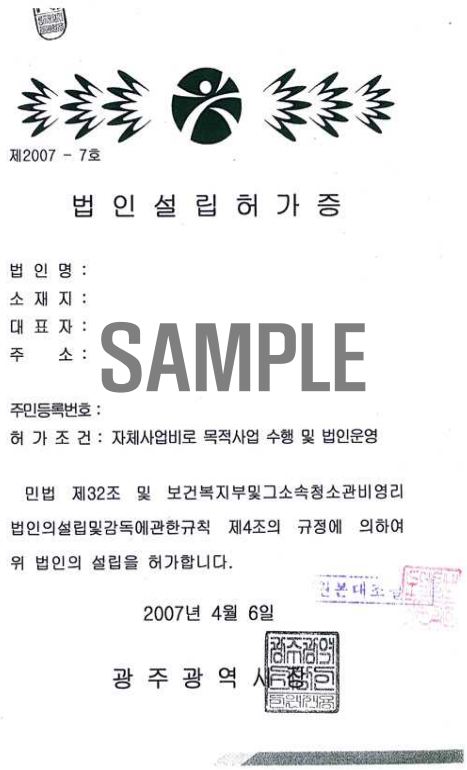

제2007 - 7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허 가 조 건 : 자체사업비로 목적사업 수행 및 법인운영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07년 4월 6일

광 주 광 역 시

SAMPLE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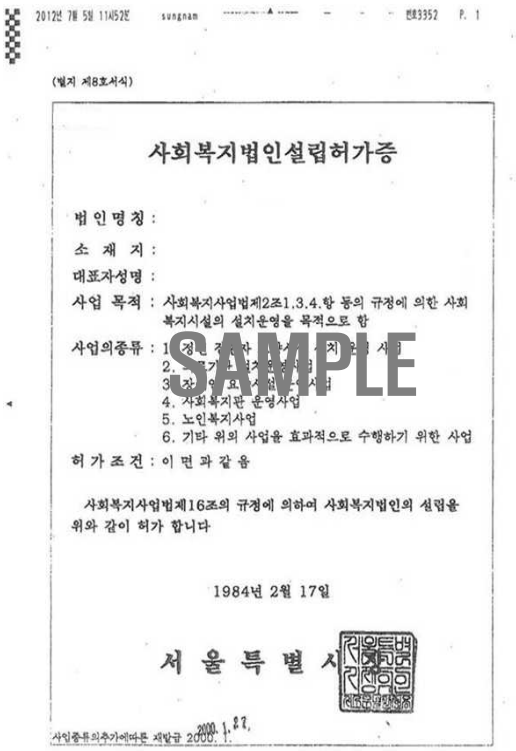

2012년 7월 5일 11시52분 sungnam ... P. 1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명칭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3,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종류 : 1. 정 ... 치 운영
2. ...
3. ...
4.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허 가 조 건 : 이 면 과 같 음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1984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사업종류의추가에따른 재발급 2000. 1. 27.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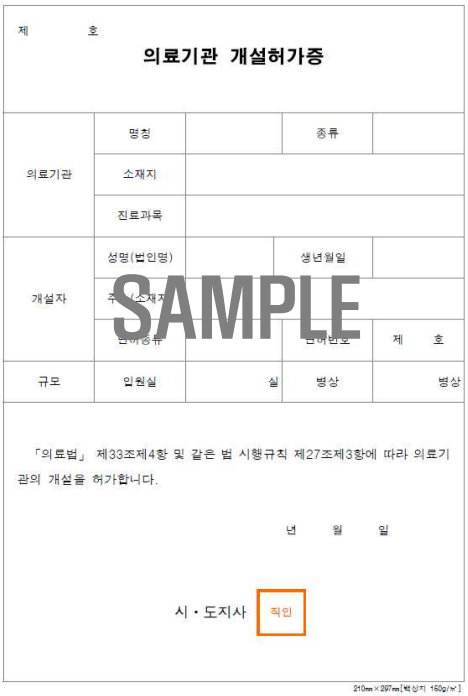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 |
|---|---|---|---|---|
| 의료기관 | 명칭 | | 종류 | |
| | 소재지 | | | |
| | 진료과목 | | | |
| 개설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 |
| | 주소(소재지) | | | |
| | 면허종류 | | 면허번호 | 제 호 |
| 규모 | 입원실 | 실 | 병상 | 병상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SAMPLE

<증빙 예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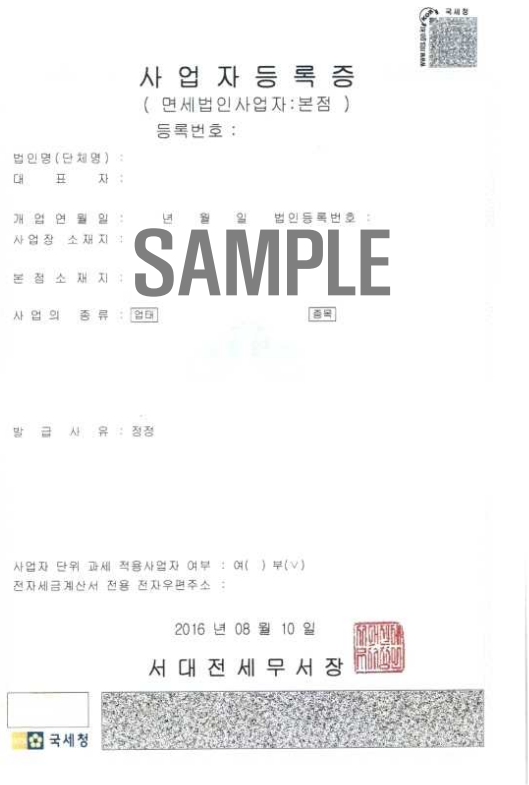

사 업 자 등 록 증
( 면세법인사업자:본점 )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본 점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SAMPLE

발 급 사 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 년 08 월 10 일
서 대 전 세 무 서 장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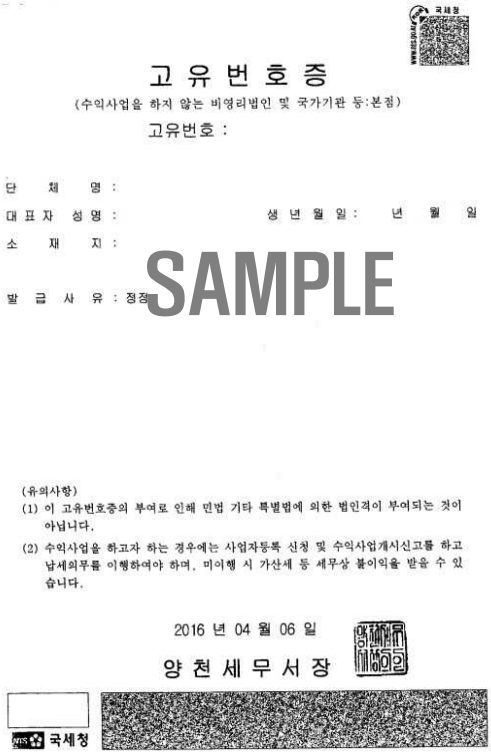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재 지 :
발 급 사 유 : 정정

SAMPLE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년 04 월 06 일
양 천 세 무 서 장

국세청

<증빙 예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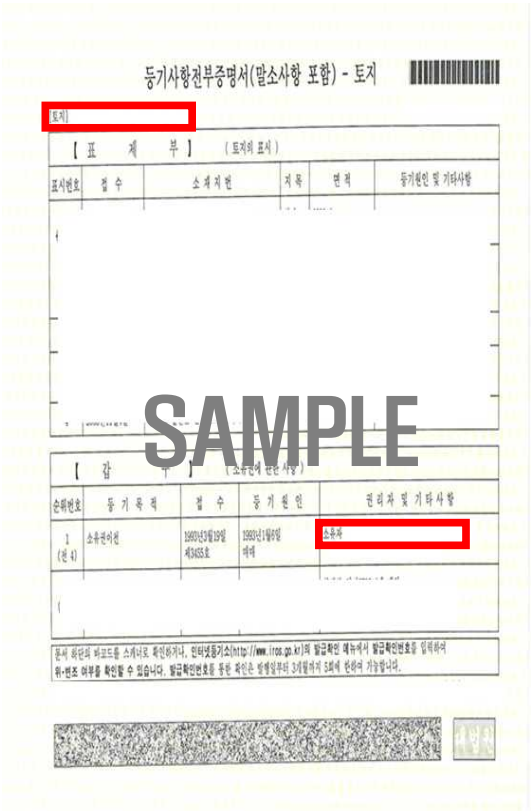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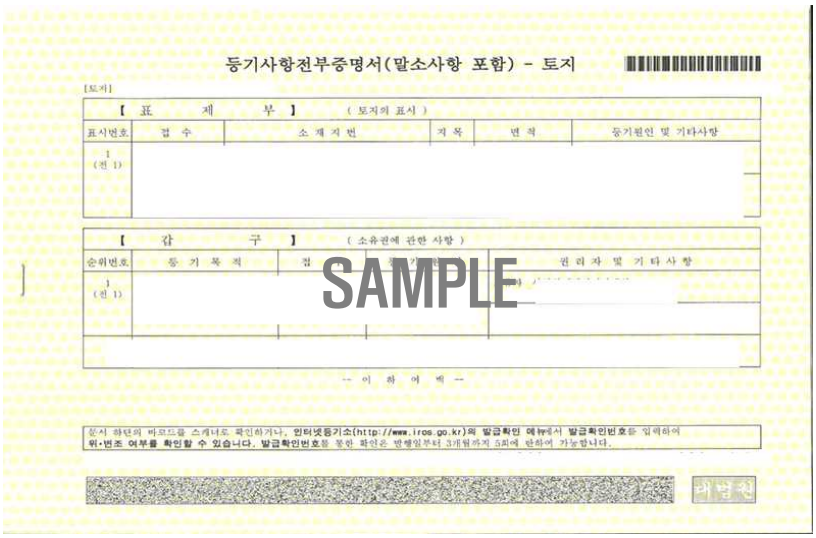


※ *사업제안서상의 대상지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토지 또는 건물이여야 함(개인소유 제외)*

## 참고 6 '19년도 나눔숲 · 나눔길 조성사업 평가우수 기관

| No. | 기관명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나눔길 |
| 2 | 강원도 철원군 | 나눔숲 |
| 3 | 충청남도 청양군 | 나눔숲 |
| 4 | 전라남도 여수시 | 나눔길 |
| 5 | 전라남도 무안군 | 나눔숲 |
| 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나눔길 |

※ 직제순 임

## 참고 7 '19년도 나눔숲·나눔길 사후관리 모니터링 우수 기관

| No. | 기관명 | 비고 |
|---|---|---|
| 1 | 서울광역시 광진구 | |
| 2 | 서울광역시 노원구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4 | 울산광역시 중구 | |
| 5 | 강원도 속초시 | |
| 6 | 강원도 홍천군 | |
| 7 | 경기도 광주시 | |
| 8 | 경기도 안양시 | |
| 9 | 경기도 평택시 | |
| 10 | 전라북도 임실군 | |
| 11 | 전라북도 정읍시 | |
| 12 | 경상남도 고성군 | |

※ 직제순 임

[양식 1]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토지영구사용 동의서

□ 토지현황

| 주 소 | 지 목 | 대장면적 (㎡) | 동의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토지에 있어 '21년도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조성사업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 선정 이후 복지시설나눔숲(실외) 토지로 영구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소 유 자 | 사 용 자 |
|---|---|
| *주소*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기관명* (인) | *기관명* (인) |

[양식 2]

##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옥상녹화 조성 사업 추진 동의서

**본 기관(시설)은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옥상녹화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동의합니다.**

1. 옥상녹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배수공사, 방수공사, 안전 휀스는 녹색자금으로 시공 및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본 기관(시설)의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옥상녹화 조성 이후 발생하는 배수, 누수 및 안전문제 등의 책임은 본 기관(시설)에서 감수하겠습니다.

3. 기타 옥상녹화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2020 년 월 일

○ 기 관 명 :
○ 기관(시설) 주소 :
○ 대표자 성명 :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양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수집·이용 목적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정보제공 기간 |
|---|---|---|---|
| 산림청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0 년 월 일

기관(시설)명: 성 명: (인/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 3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내)

## 1.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실내(천장·벽면) 목재 시공 및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면역력 증강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

## 2.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이용자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재를 활용한 실내환경 개선

## 3. 총사업비 : 3,570백만원

## 4.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녹색자금 지원액 | 비 고 |
|---|---|---|
| 녹색자금 100%보조<br>(자부담 없음) | 개소당 1억원 내외<br>최대 2억원까지 | 복지시설나눔숲(실외)과<br>동시 신청(응모) 불가 |

※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2개 사업 중 택1 신청)

※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중요)** 녹색자금 지원 이후 5년 이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진흥원으로 반환하여야 함

## 5. 응모자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

## 6. 조성대상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건물

※ 나눔숲(실내) 조성대상 건물이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7. 신청서 제출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시스템 입력 및 최종 제출 | 사업시행자 |
|---|---|---|---|
| 사회복지시설<br>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br>→목재문화진흥회 | 목재문화진흥회<br>→ 진흥원 | 목재문화진흥회 |

※ 제안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으로 교부되지 않음**('진흥원 → 목재문화진흥회'로 교부)

## 8. 응모 및 선정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시스템 입력 및 제출 | ③ 현장심사 |
|---|---|---|
|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 **목재문화진흥회** | **진흥원** |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목재문화진흥회 전자메일로 제출 ('20. 7. 24. 18시까지, woodculture@kawc.or.kr)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을 녹색자금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20. 7. 31. 18시까지) | 서류검토 → 현장심사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기준 통과사업限) |

⇨ ⇨ ⇩

| ⑤ 선정결과 통보 | ④ 지원대상 결정 |
|---|---|
| **진흥원** | **산림청** |
| 선정결과 통보 (진흥원→신청기관)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최종결정('20. 9월) |

⇦

## 9. 응모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은 나눔숲 조성사업 취지 및 공모내용 등을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 (서식은 <참고 3> 참조)

- 신청 기관은 목재문화진흥회 전자메일주소(woodculture@kawc.or.kr)로 **'20. 7. 24.(금) 18시까지 신청서 등 제출 후 진흥회로부터 접수확인 메일을 회신 받아야 신청 완료**

※ 접수확인 문의 (02-3463-9634 목재문화진흥회)

※ 사업관련 문의 (042-719-4081~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사업 명칭은 「○○(시·군·구)○○(시설명) 나눔숲(실내)」으로 함

※ 시설에서 '사업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 산출은 「녹색자금사업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지침」과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사업비 산출 조견표(<참고 1>)를 참조

- 목재문화진흥회는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 후 마감기한인 **'20. 7. 31.(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를 온라인 접수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오류발생 등 접속이 어려울 있으며 마감기한 이후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사전 접수 필요

○ 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필수)

| 구 분 | 유 의 사 항 |
|---|---|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 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시설작성) |
| 복지시설신고증 |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장이 인가한 시설에 한함 |
| 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 관할기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 부동산등기부 등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인의 토지 및 건물일 것 |

| 구 분 | 유 의 사 항 |
|---|---|
| 건축물대장 | 건축물 면적 및 준공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건축물 대장 제출 |
| 영구사용동의서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대상 토지 및 건물이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소유가 아닌 경우 제출 |
| 사업추진동의서 | 나눔숲(실내) 조성대상 토지 및 건물이 사회복지시설 소유가 아닌 경우 제출 |
| 개인정보동의서 | 담당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 |
| 평면도, 단면도 | 사업대상지 확인이 가능한 평면도, 단면도 제출 |
| 화재보험가입증서 |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건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출 |

## 10. 응모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응모가 제한 됨)

- ’20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관・단체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의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토지 및 건물이 아닌 경우
- 해당 대상지 건물이 공모일 기준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기관
  ※ 준공일이 2010년 7월 1일 이전인 기관
-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안하는 기관·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시설투자 또는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
-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녹색자금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단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소유 또는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건물이 아닌 곳에 조성할 시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2. 심사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 실내 목재환경 개선의 필요성

○ 실내환경 개선 후 거주자(이용자) 활용성(이용 시간 등)

○ 신청사업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적합성

○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

○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 건물의 상태 및 준공년수와 실내환경 개선의 시급성

○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면적 및 신청공간의 적절성

○ 실내환경 개선 후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구조적 안전성,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안전 대비 여부

○ 사업추진의 종합적 여건(민원발생 가능성,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여건 등)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 사업제안서에「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고 1 사업비 산출 조견표 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 □ 조견표 제시 목적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실내)'의 사업신청서 작성자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사업비 산출의 용이성, 규모의 합리성 등 제공을 목적으로 함

### □ 조성면적당 단가

○ 예상 조성면적 : 약 165㎡(조성공간 바닥의 면적)

○ 예상 조성비용 및 공사원가

- 조성비용 : 총 사업비 기준 약 642,000원/㎡
- 공사원가 : 약 514,000원/㎡ 내외(총사업비 대비 약 80% 내외)

※ 제시된 조성 비용과 공사원가는 조성공간 바닥의 면적 기준으로 벽체, 천장 등까지 공사할 수 있도록 산출한 내역임

### □ 엔지니어링 사업(건설부문) 대가기준

| 요율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 3.78 | 6.16 | 3.02 | 12.96 |
| 1억원 이하 | | | 2.85 | 12.79 |
| 2억원 이하 | | | 2.26 | 12.20 |
| 3억원 이하 | | | 2.06 | 12.00 |
| 5억원 이하 | | | 1.89 | 11.83 |
| 10억원 이하 | | | 1.66 | 11.60 |
| 20억원 이하 | 3.33 | 5.47 | 1.53 | 10.33 |
| 30억원 이하 | 3.10 | 5.10 | 1.48 | 9.68 |
| 50억원 이하 | 2.82 | 4.67 | 1.45 | 8.94 |

( 이 하 생 략 )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 1. 28., 일부개정)

## 참고 2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종류

### □ 사회복지시설 종류

| 소관부처 | 시설유형 | 세부종류 | | 관련법 |
|---|---|---|---|---|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br>○ 노인의료복지시설<br>○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재가노인복지시설<br>○ 노인여가복지시설<br>○ 노인보호전문기관<br>○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에 지역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아동복지시설 | ○ 아동양육시설<br>○ 아동일시보호시설<br>○ 아동보호치료시설<br>○ 자립지원시설<br>○ 공동생활가정 | ○ 아동상담소<br>○ 아동전용시설<br>○ 지역아동센터<br>○ 아동보호전문기관<br>○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br>○ 중증장애인 거주시설<br>○ 장애영유아 거주시설<br>○ 장애인단기 거주시설<br>○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br>○ 장애인직업재활시설<br>○ 장애인의료재활시설<br>○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 어린이집 |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 정신보건시설 | ○ 정신요양시설<br>○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노숙인시설 | ○ 노숙인자활시설<br>○ 노숙인재활시설<br>○ 노숙인요양시설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br>○ 노숙인일시보호시설<br>○ 노숙인급식시설<br>○ 노숙인진료시설<br>○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자원에 관한 법률」 |
| |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 결핵·한센시설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 지역자활센터 | -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 일반지원시설<br>○ 청소년지원시설<br>○ 외국인여성지원시설<br>○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자활지원센터<br>○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가정폭력보호시설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가정폭력상담소<br>○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br>○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br>○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br>○ 일시지원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 청소년복지시설 | ○ 청소년쉼터<br>○ 청소년자립지원관<br>○ 청소년치료재활센터<br>○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발행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의료시설 종류

| 시설유형 | 정의 | 세부종류 | 관련법 |
|---|---|---|---|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 의원<br>○ 치과의원<br>○ 한의원 | 「의료법」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 | |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 병원<br>○ 치과병원<br>○ 한방병원<br>○ 요양병원<br>○ 종합병원 | |

※ 자료출처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요양병원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참고 3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제안서 양식

### □ 제안서 구성

○ 사업신청서

○ 사업제안서

### □ 제안서 작성 및 유의 사항

○ *'기울임'* 및 '파란색' 글씨는 작성에 관한 설명 및 예시로 작성시 삭제할 것

○ 사업신청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양식 및 작성요령 참고

○ 신청 기관은 목재문화진흥회 전자메일주소(woodculture@kawc.or.kr)로 **'20. 7. 24.(금) 18시까지 신청서 등 제출 후 진흥회로부터 접수확인 메일을 회신 받아야 신청 완료**

○ 목재문화진흥회는 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의 '녹색자금 공모' 란을 통하여 사업신청서(직인 포함)를 첨부하여 마감기한까지 제출('20. 7. 31.(금) 18시까지)

※ 제출시 파일제목은 「'21년도 녹색자금 공모 실내 나눔숲(단체 또는 기관명)」으로 작성 제출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오류발생 및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접수 필요

○ 1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눔숲(실외)'**과 **'나눔숲(실내)'**을 동시에 사업 신청할 수는 없으며,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두 사업 모두 탈락 처리됨(2개 사업 중 택1 신청)

## 1. 총괄 사업신청서 ※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신청서(총괄)

| | | | |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OOO* |
|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00개월)* | | |
| 총사업비 | *0,000,000원(녹색자금)* | | |
| 신청 개소수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총 00건*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총괄표 ---------- 1부
2.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 ( )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2. 사업신청 총괄표 ※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작성

**목재문화진흥회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신청 총괄표**

| No. | 시설명 | 설립 유형 | 사업비 (원) | 신청공간 개수 | 신청공간 면적 (㎡) | 조성단가 (원/㎡) |
|---|---|---|---|---|---|---|
| 1 | ㅇㅇㅇㅇ (시설유형) | 법인 지자체 국가 | 0,000,000 | | 0,000 (바닥면적 기준으로 작성) | 0,000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 | | | | | | |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합계 | | | | | | |

※ 시·도에서는 사업신청 목록을 차례로 기재
※ '시설명'란은 시설유형을 기재(<참고 2>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종류 참조)
※ '사업비'란은 시·도의 심사액을 기재하되, 반드시 신청서상의 신청 사업비를 심사액과 일치토록 조정함(진흥원은 위 '사업비'란의 금액기준으로 심사함)

## 3. 사업신청서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신청서

| | | | | | |
|---|---|---|---|---|---|
| 시 설 명 | OOOOO | 설립유형 | 법인·지자체·국가 | 대표자 | OOO |
| | | 시설유형 | <참고 2> | | |
| 사 업 명 | 예) ○○(시·군·구)○○(시설명) 나눔숲(실내) | | | | |
| 신청면적 및 준공일 | 신청공간 면 적 | 실, ㎡( 평) ※ 공간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건 물 준 공 일 | 0000년 00월 00일 | |
| 사 업 기 간 | 2021. 00. 00. ~ 2021. 00. 00.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000-000-0000 | |
| 사 업 비 | 0,000,000원(녹색자금) | | | | |
| 사업지 주소 | 지번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동 00-0번지 | | | |
| | 도로명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로 00번길 000 |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 1부
2. 관련 증빙서류 등 ---------- 1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4. 사업제안서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아래내용은 심사에 반영

**[○○(시·군·자치구)○○(복지시설명)]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 Ⅰ. 사업계획

### 1. 사업배경

○ *(수혜자 유형 및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재)*

○ *(현재의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기재)*

○

### 2. 사업목적

○ *(조성 후 시설이용자를 위한 활용 목적 위주로 기재)*

○

### 3. 사업대상지 현황

○ 건물 현황

| 건물 형태 | □ 단독 □ 상가 □ 복합 □ 기타 ( ) | 5년 이내 용도변경 가능성 | □ 용도변경 □ 해당없음 | | |
|---|---|---|---|---|---|
| 주 소 | | 조성면적 (㎡) | 소유자 | 소유자·제안자 일치 여부 | 사업추진 동의여부 |
| 계 | | *100*㎡ | | | |
| | | *100*㎡ | *○○시장* | *O/X* | *O/X* |
| | | | | | |
| | | | | | |

○ 신청공간 현황

| 구분 | 공간1 | 공간2 | 공간3 | 공간4 | 공간5 | 공간6 | 공간7 |
|---|---|---|---|---|---|---|---|
| 위치 | *1층* | | | | | | |
| 공간면적 | ㎡ | ㎡ | ㎡ | ㎡ | ㎡ | ㎡ | ㎡ |
| 신청면적 | ㎡ | ㎡ | ㎡ | ㎡ | ㎡ | ㎡ | ㎡ |
| 현재용도 | | | | | | | |
| 벽체구조 | | | | | | | |
| 창문유형 | | | | | | | |
| 천정유형 | | | | | | | |
| 누수(결로) | | | | | | | |
| 기타현황 (현재공간의 문제점) | *※ 각 공간에 습도조절 시설, 환기시설 여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내역과 곰팡이 등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자세히 기술* | | | | | | |
| 세부요청사항 | *-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세부 요구 사항 작성*<br>** 개선 대상 공간의 벽면, 천장 우선 시공*<br>*(기타 가구, 창호, 흡음재 등 사업범위 외 필요사항 자부담 원칙)*<br>** 단순기능보강사업(화장실, 보일러, 창호 교체 등)위주의 사업은 지양*<br>** 신축, 증축 등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제외* | | | | | | |
| 공사 시 대체공간 계획(약 2주) | ** 대상공간의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기간 동안 해당 공간용도를 대체할 공간에 대한 계획* | | | | | | |

** 위치는 층수를 기재, 면적은 각 공간별 실면적 기재*
** 창문유형 : PVC창, 알루미늄창, 목창, 기타로 기재*
** 벽체구조 : 콘크리트, 조적(벽돌), 샌드위치판넬, 가벽 등으로 기재*
** 천정유형 : 텍스, 합판, 노출, 기타로 기재*
** 누수(결로) : 있음, 없음으로 기재*
** 기타현황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각 조성공간별 기재*

## 4. 시설 현황(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table>
<tr><td>단체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주 소</td><td colspan="6">우편번호 : 대표전화 : FAX :</td></tr>
<tr><td colspan="6">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td></tr>
<tr><td colspan="6">※ 도로명 주소로 기입</td></tr>
<tr><td>설립일<br>(설립근거)</td><td></td><td>법인허가일<br>(주무기관)</td><td></td><td>법인<br>형태</td><td colspan="2">재단( ), 사단( )<br>특수( ), 기타( )</td></tr>
<tr><td rowspan="2">이용자<br>현 황</td><td colspan="3">수용정원 : 명 / 수용현원 : 명</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 rowspan="2">거주시설 ( )<br>이용시설 ( )</td></tr>
<tr><td colspan="3">시설 직원 : 명 / 기타이용자 : 명</td></tr>
<tr><td>연 혁</td><td colspan="3"></td><td>설립목적 및<br>주요사업분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주 요<br>임직원</td><td>직 책</td><td>성 명</td><td colspan="2">주 요 경 력</td><td>임기</td><td>기 타</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대 표 자</td><td></td><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조직구성</td><td rowspan="2">계</td><td colspan="2">임 원</td><td colspan="2">직원(교직원)</td><td rowspan="2">회원 (단체)</td></tr>
<tr><td>상 임</td><td>비상임</td><td>상 근</td><td>비상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무실<br>현 황</td><td colspan="6">- 면적 : 평,<br>- 임대 또는 자가 : 임대 ( ), 자가 ( )</td></tr>
<tr><td>외부기관<br>지적사항</td><td colspan="6">-<br>-</td></tr>
</table>

*※ 이용자 현황*

*- 공식증명서 상의 수용정원 기준으로 작성, 다만 시설 특성상 별도 정원이 없는 시설은 해당사유 기재*

*- '기타이용자'는 입소자, 시설직원을 제외한 상시 주민 이용자 등을 기재*

*※ 외부기관 지적사항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기재*

※ *아래의 증빙자료를 별도의 파일(양식 참조)에 저장하여 사업제안서와 같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제출*

*1-1. 복지시설신고증*

*1-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허가증)*

*2. 법인설립허가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부동산등기부 등본*

*5. 건축물대장*

*6. 사업추진동의서*

*7. 평면도, 단면도*

*8. 화재보험가입증서(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출)*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0. 토지 및 건물 영구사용동의서*

## 5. 조성 후 활용계획

○

○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종료 후 해당 공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6. 사후관리 계획

○

○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종료 후 관리재원, 관리방법 등 사후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 녹색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완공일로부터 5년간 | • 「녹색자금의 관리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함<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br>–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수 없음 |

## 7. 복권기금(녹색자금) 홍보계획

○ 홍보계획

| |
|---|
| ○<br>○<br>*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 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

| |
|---|
| ○<br>○<br>* *수혜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통한 수요조사 및 지자체, 시공사, 시설관계자 3자 의견조정 간담회 등 기재* |

## 8. 기대효과

○

○

# Ⅱ. 참고자료

○ **사업대상지 사진** *(심사 및 선정 이후 활용이 가능토록 작성)*

| 공간1 사진 |
| --- |
| ***※사진촬영및첨부방법***<br>*1) 사진은 **선명하게** 찍어 칼라로 제출*<br>*2) **아래의사진3매이상제출(사진파일(jpg))***<br>*① 신청 공간 전체 1매*<br>*② 개선할 부분 사진(상세 사진) 2매 이상*<br>*③ 용량 **4M이상** 사진 첨부*<br>*3) 각 사진별 일련번호와 간단한 설명 기재* |
| 전경<br>(*간단설명*) |
| |
| 공간1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①<br>(*간단설명*) |
| |
| 공간1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②<br>(*간단설명*) |

| 공간2 사진 |
| --- |
| |
| 전경<br>(*간단설명*) |
| |
| 공간2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①<br>(*간단설명*) |
| |
| 공간2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②<br>(*간단설명*) |

## 공간3 사진

| |
|---|
| |
| 전경<br>(*간단설명*) |
| |
| 공간3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①<br>(*간단설명*) |
| |
| 공간3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②<br>(*간단설명*) |

| 공간*00* 사진 |
| --- |
| |
| 전경<br>(*간단설명*) |
| |
| 공간*00*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①<br>(*간단설명*) |
| |
| 공간*00* 개선 부분 상세 사진②<br>(*간단설명*) |

## <증빙예시 1>

*※ 시설신고증과 법인설립허가증 상의 법인명이 동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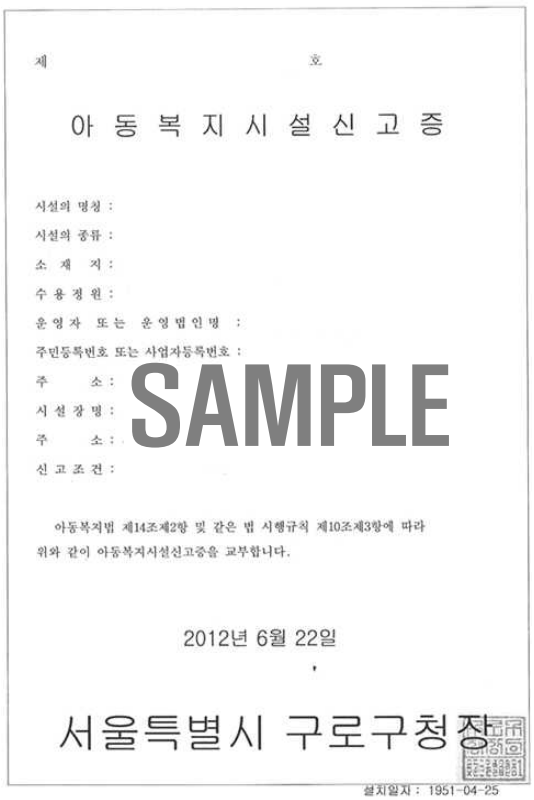

제 호

아 동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종류 :
소 재 지 :
수 용 정 원 :
운 영 자 또 는 운 영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 설 장 명 :
주 소 :
신 고 조 건 :

SAMPLE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설치일자 : 1951-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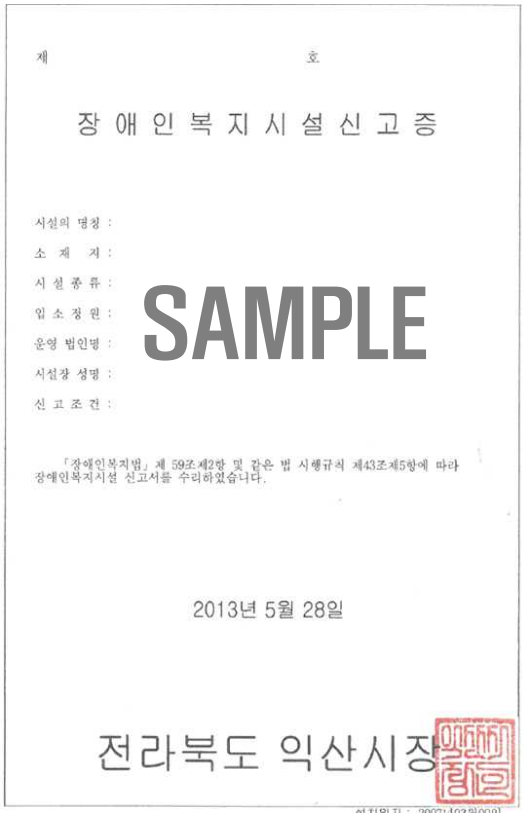

제 호

장 애 인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시 설 종 류 :
입 소 정 원 :
운영 법인명 :
시설장 성명 :
신 고 조 건 :

SAMPLE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8일

전라북도 익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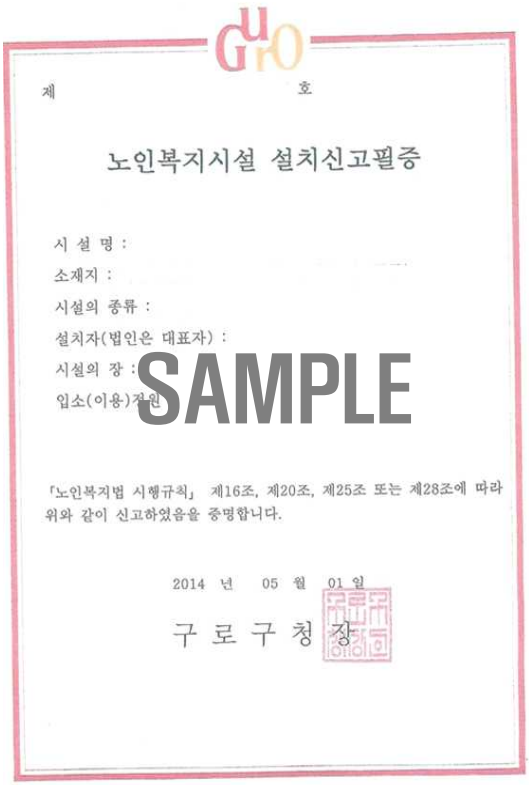

제 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시 설 명 :
소재지 :
시설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시설의 장 :
입소(이용)정원 :

SAMPL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년 05 월 01 일

구 로 구 청 장

제

사 회 복 지 시 설 신 고 증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사 업 종 별 :
수 용 정 원 : 명
운 영 자 또 는 운 영 법 인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 설 장 명 :
주 소 :
신 고 조 건 :

SAMPLE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증빙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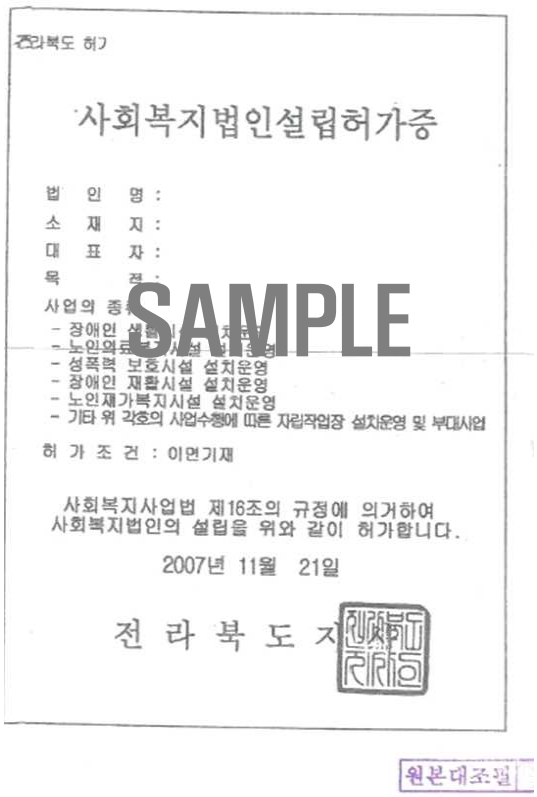

전라북도 허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목 적 :
사업의 종류 :
-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운영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운영
-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및 부대사업

허 가 조 건 : 이면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전 라 북 도 지

SAMPLE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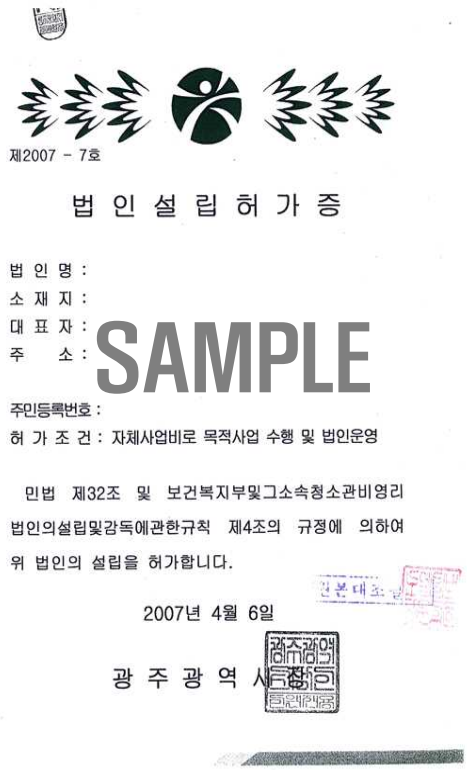

제2007 - 7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허 가 조 건 : 자체사업비로 목적사업 수행 및 법인운영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07년 4월 6일

광 주 광 역 시

SAMPLE

원본대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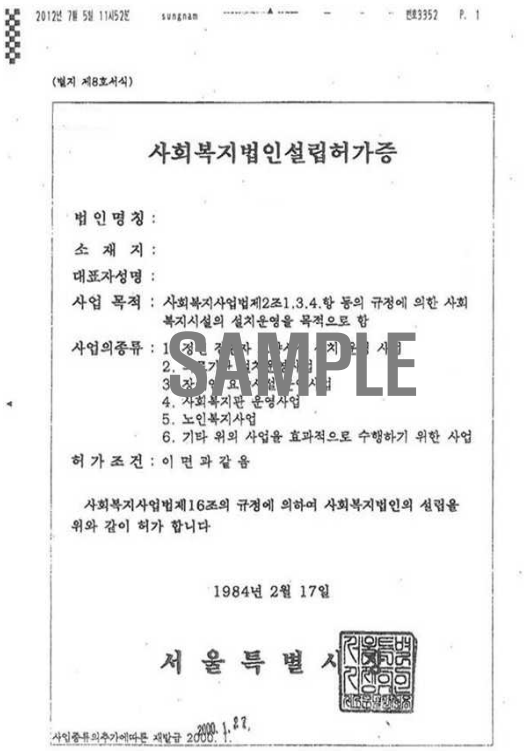

2012년 7월 5일 11시52분 sungnam ... P. 1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명칭 :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1.3.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종류 : 1. 정 ... 시
2. ...
3. ...
4.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허 가 조 건 : 이 면 과 같 음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1984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사업종류의추가에따른 재발급 2000. 1. 27.

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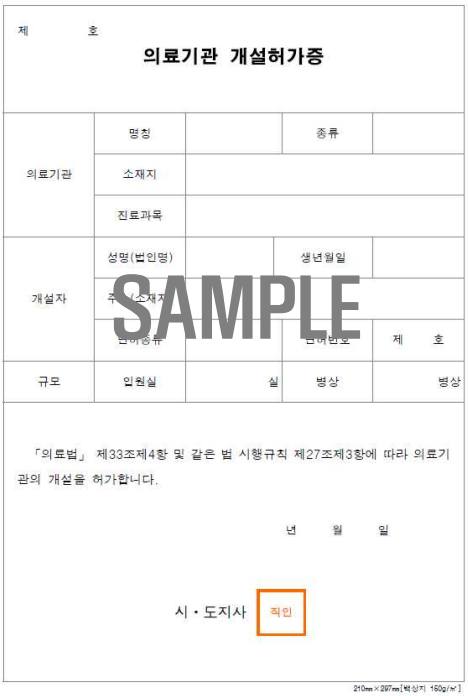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 | | |
|---|---|---|---|---|
| 의료기관 | 명칭 | | 종류 | |
| | 소재지 | | | |
| | 진료과목 | | | |
| 개설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 |
| | 주(소재지) | | | |
| | 면허종류 | | 면허번호 | 제 호 |
| 규모 | 입원실 | 실 | 병상 | 병상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SAMPLE

<증빙 예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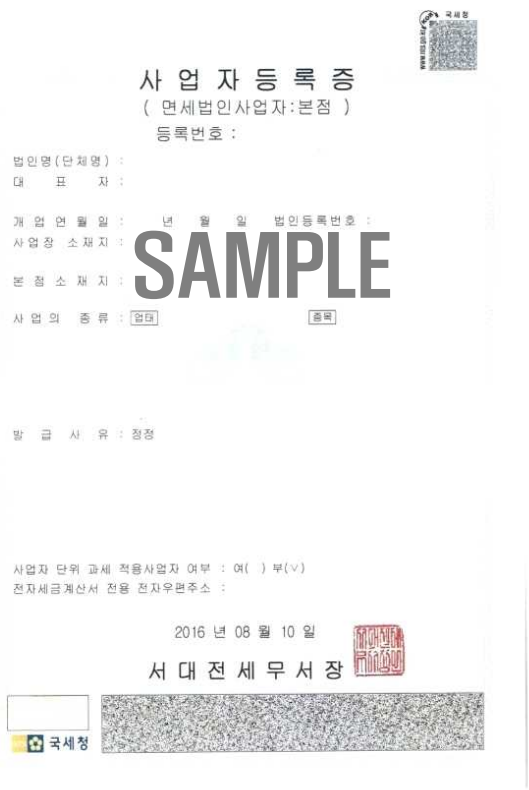

사 업 자 등 록 증

( 면세법인사업자:본점 )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본 점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SAMPLE

발 급 사 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 년 08 월 10 일

서 대 전 세 무 서 장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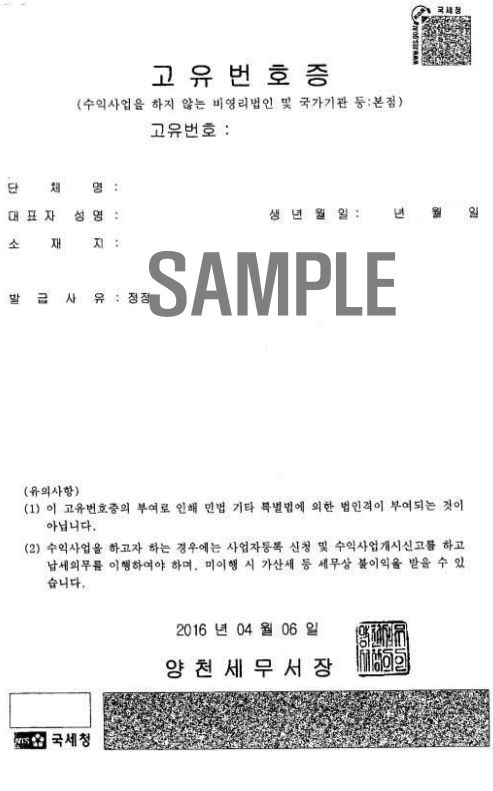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재 지 :

발 급 사 유 : 정정

SAMPLE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년 04 월 06 일

양 천 세 무 서 장

국세청

<증빙 예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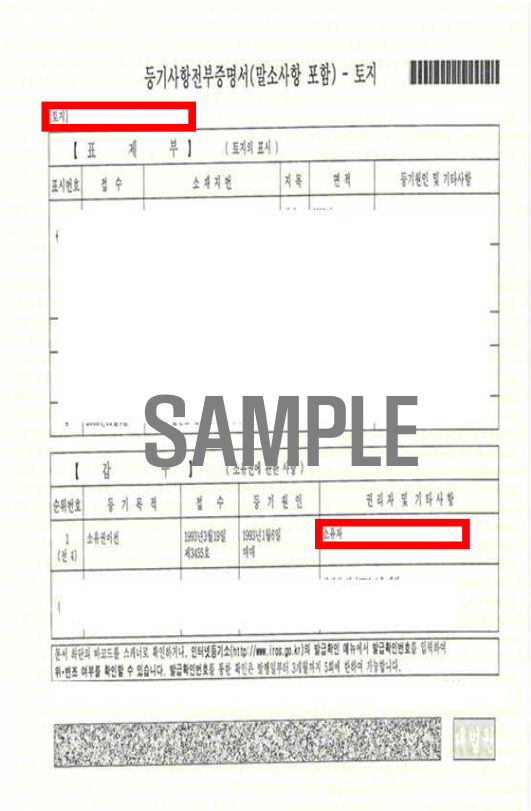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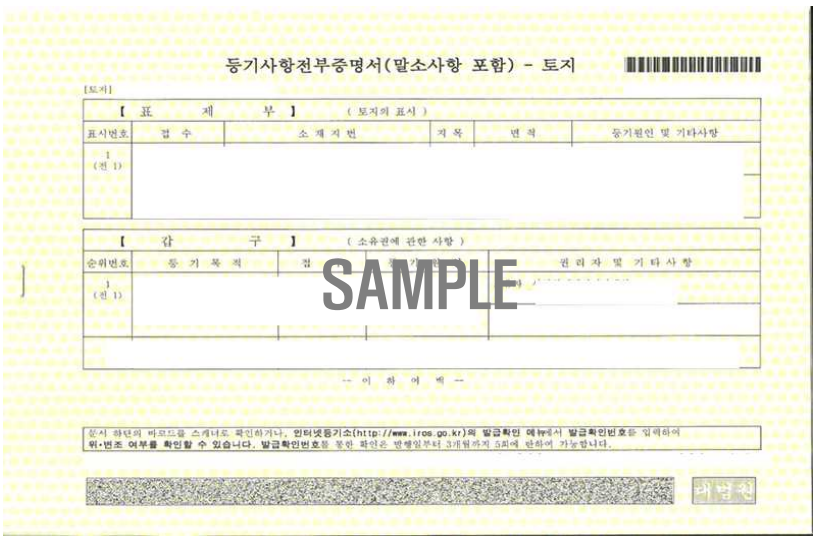


※ *사업제안서상의 대상지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비영리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의 토지 또는 건물이여야 함(개인소유 제외)*

## <증빙 예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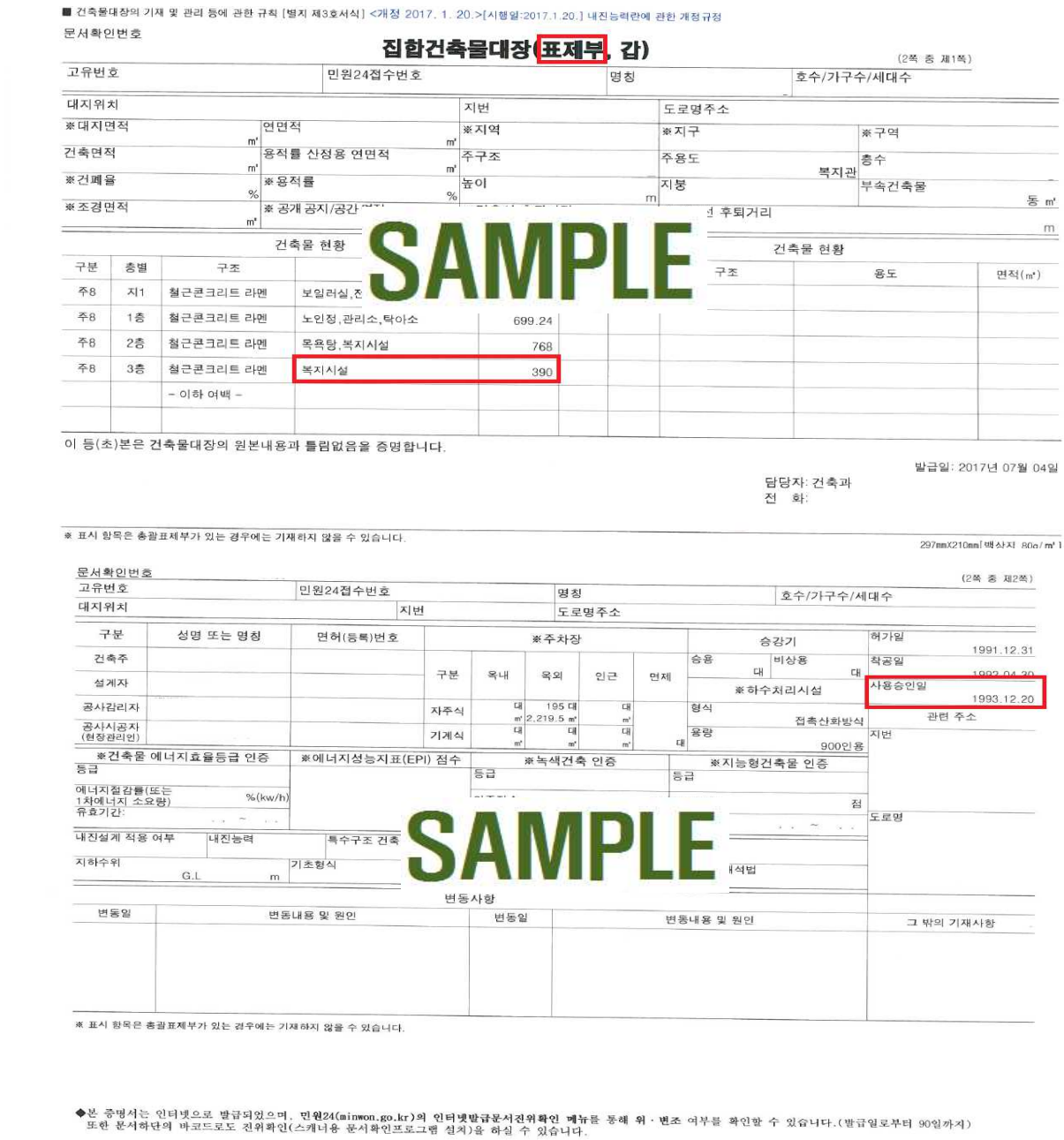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20.>[시행일:2017.1.20.]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

문서확인번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2쪽 중 제1쪽)

| 고유번호 | | 민원24접수번호 | | 명칭 | | 호수/가구수/세대수 | |
|---|---|---|---|---|---|---|---|
| 대지위치 | | 지번 | | 도로명주소 | | | |
| ※대지면적 | ㎡ | 연면적 | ㎡ | ※지역 | ※지구 | ※구역 | |
| 건축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주구조 | 주용도 복지관 | 층수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이 | 지붕 | 부속건축물 | 동 ㎡ |
| ※조경면적 | ㎡ | ※ 공개 공지/공간 | | m | | 후퇴거리 | m |

건축물 현황

| 구분 | 층별 | 구조 | | |
|---|---|---|---|---|
| 주8 | 지1 | 철근콘크리트 라멘 | 보일러실,전 | |
| 주8 | 1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 | 노인정,관리소,탁아소 | 699.24 |
| 주8 | 2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 | 목욕탕,복지시설 | 768 |
| 주8 | 3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 | 복지시설 | 390 |
| | | - 이하 여백 - | | |

건축물 현황

| 구조 | 용도 | 면적(㎡) |
|---|---|---|

SAMPLE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17년 07월 04일

담당자: 건축과

전 화: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X210mm[백상지 80g/㎡]

문서확인번호

(2쪽 중 제2쪽)

| 고유번호 | | 민원24접수번호 | | 명칭 | | 호수/가구수/세대수 | |
|---|---|---|---|---|---|---|---|
| 대지위치 | | 지번 | | 도로명주소 | | | |

| 구분 |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등록)번호 | ※주차장 | | | | | 승강기 | | 허가일 |
|---|---|---|---|---|---|---|---|---|---|---|
| | |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승용 대 | 비상용 대 | 1991.12.31 |
| 건축주 | | | | | | | | ※하수처리시설 | | 착공일 |
| 설계자 | | | | | | | | | | 사용승인일 1993.12.20 |
| 공사감리자 | | | 자주식 | 대 ㎡ | 195 대 2,219.5 ㎡ | 대 ㎡ | | 형식 | 접촉산화방식 | 관련 주소 |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대 | 용량 | 900인용 | 지번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 |
|---|---|---|---|---|
| 등급 | | 등급 | 등급 | |
| 에너지절감률(또는 1차에너지 소요량) %(kw/h) | | | 점 | 도로명 |
|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 내진능력 | 특수구조 건축 | 해석법 | |
|---|---|---|---|---|
| 지하수위 G.L m | 기초형식 | | | |

SAMPLE

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민원24(minwon.go.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①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클릭*

*② '대장구분'-'대장종류' 선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집합'-'표제부' / 단독주택 등 개인소유주 건물 → '일반'-'일반')*

*③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란 : 여러 동(호)을 가진 건축물인 경우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나타나는 팝업에서 동(호)을 선택하여 자동완성*
*(예: 동번호-137061, 호명칭-복지관)*

*※ 건축물대장 활용방법*

*① 사업계획요약서 내 전용면적 → 건축물 대장 내 해당 건축면적을 기제*

*② 사업계획요약서 내 '건물 준공일' → 건축물 대장 내 '사용승인일' 참조*

<증빙 예시 6>

3200
3200
복도
현관
침실2
2650
570
8140
SAMPLE
1680
거실
침실1
3240
1890
발코니1
1290
600
화단
3200
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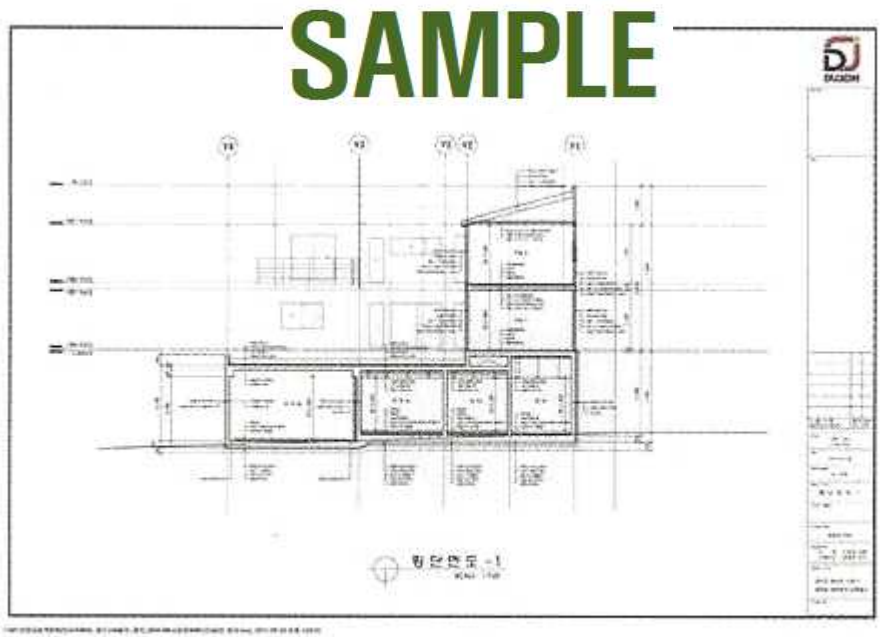
SAMPLE

단면도

<증빙 예시 7>

보험가입인증서

Certificate of Insurance 保险证明书

업체명

수사시 SAMPLE

본 인증서는 삼성화재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보험증권

증권번호

보험기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양식 1]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추진 동의서

□ 건물현황

| 주 소 | 용 도 | 대장면적 (㎡) | 동의면적 (㎡) |
|---|---|---|---|
| | | | |

상기 건물에 있어 '21년도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동의합니다.

1.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진흥원으로 반환하겠습니다.

2.「녹색자금의 관리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5년 간 해당 공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 소 유 자 | 사 용 자 |
|---|---|
| *주소*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기관명* (인) | *기관명* (인) |

[양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수집·이용 목적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정보제공 기간 |
|---|---|---|---|
| 산림청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0 년 월 일

기관(시설)명: 성 명: (인/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양식 3]

#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지 영구사용 동의서

□ 토지현황

| 주 소 | 지 목 | 대장면적 (㎡) | 동의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토지 및 건물에 있어 '21년도 복지시설나눔숲(실내) 조성사업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 선정 이후 복지시설나눔숲(실내) 토지로 영구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소 유 자 | 사 용 자 |
|---|---|
| *주소*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기관명* (인) | *기관명* (인) |

# 4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1. 사업목적

○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에 다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2. 사업내용

○ 무장애 산행을 위한 목재데크 설치, 노면을 포장·정비하고 체험·학습 및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마다 쉼터·편의시설 설치

## 3. 총사업비 : 7,700백만원

## 4.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녹색자금 지원액 | 응모 개소수 |
|---|---|---|
|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br>(녹색자금 최대 60%) | 개소당 6억원 내외,<br>최대 20억원까지 | 시·도별 최대 4개소 이내,<br>공익법인은 1개소,<br>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1개소 |

※ 사업비는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녹색자금 총 지원액(자부담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별(2~3년) 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본구상(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녹색자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40% 이상 이여야 함. **사업선정 후 사업연도 본예산에 자부담(40%이상)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요)** 녹색자금 지원 이후 5년 이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외 사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진흥원으로 반환하여야 함

< 무장애나눔길 사업비(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소계(100%) | 2,700 | 900 | 900 | 900 |
| 녹색자금(60%) | 1,620 | 540 | 540 | 540 |
| 자부담(40%) | 1,080 | 360 | 360 | 360 |
| 배분비율 | 100% | 33.3% | 33.3% | 33.3% |

## 5. 응모자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응모 가능

-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 공익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호)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6. 조성대상지

| 사업시행자 | 조성대상지 |
|---|---|
| 시·도 또는 시·군·구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br>※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영구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 공익법인 | •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br>※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 영구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 •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br>※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토지 영구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 7. 신청서 제출 및 사업시행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시스템 입력 및 최종 제출 | 사업시행자 |
|---|---|---|---|
| 시·도<br>(시·군·구) | 시·군·구→<br>시·도 → 진흥원 | 시·도<br>(시·도 → 진흥원) | 시·도<br>(시·군·구) |
| 공익법인 | 공익법인 → 진흥원 | 공익법인<br>(공익법인 → 진흥원) | 공익법인 |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 제공자 → 진흥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br>(제공자 → 진흥원)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시·도, 시·군·구,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교부됨

# 8. 응모 및 선정 절차

❍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군·구)인 경우

❍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

※ 마감기한에는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오류발생 등 접속이 어려울 있으며 마감기한 이후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사전 접수 필요

## 9. 응모방법

○ 사업시행자가 시·도(시·군·구)인 경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도에 제출

※ 사업 명칭은「○○(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명) 무장애나눔길」로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 총 응모가 **4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된 사업에 대해 **자체심사(현장확인 필수)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4개소를 선정하여야 함.**

※ 총 응모개소수가 4개소 이하의 경우 자체심사 생략 가능

- 사업제안서 및 붙임서류는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한 후 마감기한인 **'20. 7. 31.(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직인 포함)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 접수
- 시·도에서는 "총괄 사업신청서(직인포함)" 및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공문(전자문서)으로 별도 제출

※ 시·도의 자체심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은 진흥원에서 별도 통보예정임

○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

-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를 진흥원에 직접 제출

※ 명칭은「○○(공익법인명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명) 무장애나눔길」로 함

- 사업제안서 및 붙임서류는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회원가입한 후 마감기한인 **'20. 7. 31.(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직인 포함)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및 붙임서류(필수)

| 구 분 | 유 의 사 항 |
|---|---|
| 총괄 사업신청서,<br>사업신청 총괄표 | 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시・도작성) |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 진흥원 양식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 |
| 공익법인 또는<br>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 공익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구 분 | 유 의 사 항 |
|---|---|
| 사업자등록증<br>또는 고유번호증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 부동산등기부 등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학교법인의 소유하는 토지일 것 |
| 토지영구사용동의서 | 무장애나눔길 조성대상 토지가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경우 제출 |
| 개인정보동의서 | 담당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 |

## 10. 응모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응모가 제한 됨)

- ’20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관・단체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
- 기존에 설치된 데크로드의 보수공사가 주요 공종인 사업
- 사업대상지에 각종 개발계획 등 타 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되어 있는 지역
- 사업시행자별 응모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조성대상지가 아닌 경우
-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안하는 기관·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시설투자 또는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
-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녹색자금 부당사용이 확인된 기관·단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법인의 토지가 아닌 곳에 조성할 시 토지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1. 가점 · 감점 (서류심사에 한하여 적용)

| 구 분 | | 유 의 사 항 |
|---|---|---|
| 가점 | 3점 | • '19년도 녹색자금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1~3위) |
| | 2점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탁월' 기관 |
| 감점 | 3점 | • '19년도 녹색자금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기관 |
| | 2점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미흡' 기관 |

※ '19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시행기관별 평균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적용하며, '우수' 및 '보통' 등급은 가감점 미부여

※ 감점 대상기관은 시·도 담당자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가점기관 <참고3,4> 참조)

## 12. 심사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혜자 접근 용이성(위치, 교통여건 등)

○ 신청사업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적합성

○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

○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 40% 이상의 자부담 반영여부

○ 나눔길 조성에 따른 산림복지 증진 기여도

○ 나눔길 조성 이후 활용계획의 구체성

○ 지반안전, 배수·물길 확보 등 사업추진의 안전성

○ 지역특색 반영 등 사업계획의 차별성

○ 국산목재 활용방안의 구체성

○ 사업추진의 종합적 여건(민원발생 가능성, 나눔길 조성을 위한 여건 등)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 사업제안서에 「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고 1 사업비 산출 조견표 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 □ 조견표 제시 목적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의 사업신청서 작성자인 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사업비 산출의 용이성, 규모의 합리성 등 제공을 목적으로 함

### □ 조성거리당 단가

○ 조성비용 : 총 사업비 기준 약 771,000,000원/㎞

※ 제시된 조성비용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 엔지니어링(건설부문) 대가기준

| 요율 /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
|---|---|---|---|---|
| |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 3.78 | 6.16 | 3.02 | 12.96 |
| 1억원 이하 | | | 2.85 | 12.79 |
| 2억원 이하 | | | 2.26 | 12.20 |
| 3억원 이하 | | | 2.06 | 12.00 |
| 5억원 이하 | | | 1.89 | 11.83 |
| 10억원 이하 | | | 1.66 | 11.60 |
| 20억원 이하 | 3.33 | 5.47 | 1.53 | 10.33 |
| 30억원 이하 | 3.10 | 5.10 | 1.48 | 9.68 |
| 50억원 이하 | 2.82 | 4.67 | 1.45 | 8.94 |

( 이 하 생 략 )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 1. 28., 일부개정)

## 참고 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사업제안서 양식

### □ 제안서 구성

○ 총괄 사업신청서(시·도에서 작성)

○ 사업신청서 총괄표(시·도에서 작성)

○ 사업신청서(시·도(시·군·구) 또는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작성)

○ 사업제안서(시·도(시·군·구) 또는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작성)

### □ 제안서 작성 및 유의 사항

○ *'기울임'* 및 '파란색' 글씨는 작성에 관한 설명 및 예시로 작성시 삭제할 것

○ 사업신청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양식 및 작성요령 참고

○ 사업시행자가 시·도인 경우

- '총괄 사업신청서'(직인포함) 및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마감기한까지 공문(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시 파일제목은 「'21년도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나눔길(시·도명)」으로 작성 제출

- 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의 '녹색자금 공모'란을 통하여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포함)를 마감기한까지 제출('20. 7. 31.(금) 18시까지)

※ 시도별 응모 개소수는 최대 4개소 이내

○ 사업시행자가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

- '사업신청서'(직인포함)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마감기한까지 직접 제출

※ 제출시 파일제목은 「'21년도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나눔길(기관 또는 단체명)」으로 작성 제출

- 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의 '녹색자금 공모'란을 통하여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포함)를 마감기한까지 제출('20. 7. 31.(금) 18시까지)

※ 시도별 응모 개소수는 최대 1개소

## 1. 총괄 사업신청서 ※ 시·도에서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신청서(총괄)

| | | | |
|---|---|---|---|
| 기 관 명 | *시·도명* | 대표자 | |
|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 개월)* | | |
| 총사업비 | *0,000*원<br>(녹색자금 *0,000*원( %) / 자부담 *0,000*원( %)) | | |
| 신청 개소수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총 *00*건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기관명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총괄표 ---------- 1부
2.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 ---------- ( )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2. 사업신청 총괄표 ※ 시·도에서 작성

# ○○시·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신청 총괄표

| 심사 순위 | 사업제안 기관명 | 사업비(원) | | | | | | 조성 길이 (km) | 조성 단가 (원/km) |
|---|---|---|---|---|---|---|---|---|---|
| | | 합계 | | | '21년 | '22년 | '23년 | | |
| | | | 녹색자금 | 자부담 | | | | | |
| 1 | ○○○○ | 000 (100%) | 000 ( %) | 000 ( %) | 000 | 000 | 000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무장애나눔길 합계 | | | | | | | | | |

※ "사업제안 기관명"은 관할 시·도로 신청한 시·군·구(광역시·도 포함)명을 기재

※ 시·도에서는 자체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차례로 작성(반드시 최대 4개소 이내로만 제출하며 표 상단 4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함)

※ '사업비'란은 시·도의 심사액을 기재하되, 반드시 사업신청서 상의 신청사업비를 심사액과 일치토록 조정함(진흥원은 위 '사업비'란의 금액기준으로 심사함)

※ 연차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연도별 자부담 비율 40% 이상으로 편성

## 3. 사업신청서 ※ 시·군·구(시·도),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작성하며, 직인은 필수로 날인하여 송부

# 2021년도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기 관 명 | 신청자인 시·군·구(광역시·도),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 | 대표자 | |
| 사 업 명 | 예) ○○(시·군·구명) ○○(지역명) 무장애나눔길<br>○○공익법인(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명) 무장애나눔길 | | | |
| 조성길이 및 단가 | 조성길이 | 00km | 조성단가 | 00원/km |
|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000-000-0000 |
| 사 업 비 | 총 계 | 000원 ※ 시·도에서는 심사액을 기재<br>(녹색자금: 000 원/자부담: 000 원) | | |
| | 2021년 | 000원 ※ 시·도에서는 심사액을 기재<br>(녹색자금: 000 원/자부담: 000 원) | | |
| | 2022년 | 000원 ※ 시·도에서는 심사액을 기재<br>(녹색자금: 000 원/자부담: 000 원) | | |
| | 2023년 | 000원 ※ 시·도에서는 심사액을 기재<br>(녹색자금: 000 원/자부담: 000 원) | | |
| 사업지주소 | 지번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동 00-0번지 | | |
| | 도로명주소 | 예) OOO도 OOO시 OOO구 OOO로 00번길 000 | | |

위와 같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으며, 첨부서류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제안서 ---------- 1부
2. 관련 증빙서류 등 ---------- 1부

※ 제출된 서류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4. 사업제안서 ※ 시·군·구(시·도), 공익법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작성하며, 아래내용은 심사에 반영

**〈○○[시·군·구] ○○[지역명]〉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그 외의 경우 : ○○공익법인(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명])**

# Ⅰ. 사업계획

### 1. 사업배경

○ *(무장애나눔길 설치 배경 및 필요성 기개)*

○ (*기조성 산책로·등산로·숲길 등과 연계 및 동선의 차별성 기재*)

○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타당성을 계량화한 데이터 기재*)

### 2. 사업목적

○ (*조성 후 활용 목적 위주로 기재*)

○

### 3. 사 업 비

| 구분 | 금액(원) | | | | | |
|---|---|---|---|---|---|---|
| | 운영비 | 시설비 | | | | 합계 |
| | | 기본·실시설계비 | 시설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합 계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100%)* |
| 녹색자금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100%)* |
| 자부담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 %)* | *0,000,000 (100%)* |

## 4. 사업대상지 현황

○ 토지 소유 현황*(편입 필지 별로 모두 작성)*

| 주 소 | 지 목 (용도지역) | 조성면적 (㎡) | 소유자 | 소유자·제안자 일치 여부 | 토지영구사용동의 여부 |
|---|---|---|---|---|---|
| 계 | | *300㎡* | | |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대지* | *100㎡* | *ㅇㅇ시장* | *O/X* | *O/X* |
| | | | | | |

○ 부지 임상

| 주요수종 | 평균임령 | 평균수고 | 평균직경 | 수종비율 (침엽수/활엽수) | 평균경사도 |
|---|---|---|---|---|---|
| | 년생 | m | cm | % | % |

○ 기타 여건

○
*※ 나눔길 조성을 위한 접근성, 지반 안정성, 선정 시 바로 착공여부 등 기재*
*※ 사업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관련 사항도 반드시 기재(대상지 주변 도시개발계획 등)*

## 6. 사업의 차별성

○ 보행약자를 위한 반영 사항

○
○
** 보행약자층을 위한 UD(Universal Design) 및 BF(Barrier Free), 접근성 개선 등의 구체적 기술*

○ 인근 숲길 현황 및 연계 방안

| 명 칭 | 조성년도 | 소재지 | 길이(km) | 이용인원 (명) | 녹색자금 지원여부 |
|---|---|---|---|---|---|
| | 년 | | | | *O/X*<br>*0,000*원 |
| 연계 방안 | | | | | |

○ 국산목재 활용방안

| |
|---|
| ○<br>○ |

## 7. 조성 후 활용계획

| |
|---|
| ○<br>○<br>* *나눔길 조성 후 보행약자, 지역주민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 등 수요자 확대 방안을 상세히 기술* |

## 8. 사후관리 계획

| |
|---|
| ○<br>○<br>* *관리기관, 관리재원, 관리항목, 관리방법과 협약여부 등 사후관리 계획 구체적 기술* |

**<참고> 녹색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 완공일로부터 5년간 | • 「녹색자금의 관리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거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함<br>•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br>-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수 없음 |

## 9. 복권기금(녹색자금) 홍보계획

○ 홍보계획

| |
|---|
| ○<br>○<br>*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 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

| |
|---|
| ○<br>○<br>* *수혜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통한 수요조사 및 지자체, 시공사 의견조정 간담회, 조성관련 착공식, 기공식 등 기재* |

## 10. 기대효과

○

○

# Ⅱ. 참고자료

## 1. 나눔길 마스터 플랜

※ *마스터플랜 세부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

## 2. 사업대상지 사진*(심사 및 선정 이후 활용이 가능토록 작성)*

| 위 치 도 | |
|---|---|
| **위성지도(스카이 뷰)**<br>※ 조성지 위치는 실선(적색)으로 표시<br>※ 사업대상지 인근에 소외계층시설(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약자층 거주지, 기타 복지관 등) 및 거주지 등이 있을 경우 표기<br>※ 사업대상지 인근에 주차장 및 대중교통시설 등이 있을 경우 표시 | |
| 위치설명 | |

| | |
|---|---|
| ※ 전경은 가급적 대상지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촬영<br>※ 사진은 선명하게 칼라로 찍어 제출(jpg파일)<br>※ 사업구역을 실선(적색)으로 표시<br>※ 사진용량은 장당 4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 | 사업대상지<br>전 경 |
| ※ 사진은 선명하게 칼라로 찍어 제출(jpg파일)<br>※ 사진용량은 장당 4MB 정도로 편집하여 첨부<br>※ 사업선정 및 조성 이후 자료로 활용가능토록 조성 전 대상지 촬영 | 사업대상지<br>근 경 |

※ 현장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진 첨부(200만화소 이상)

※ 아래의 증빙자료를 별도의 파일(양식 참조)에 저장하여 사업제안서와 같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gfund.fowi.or.kr)」에 제출

1. 공익법인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해당 기관·법인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부동산등기부 등본
4. 토지영구사용동의서(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해당 법인·기관에 한하며 개인소유 토지 불가
5.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증빙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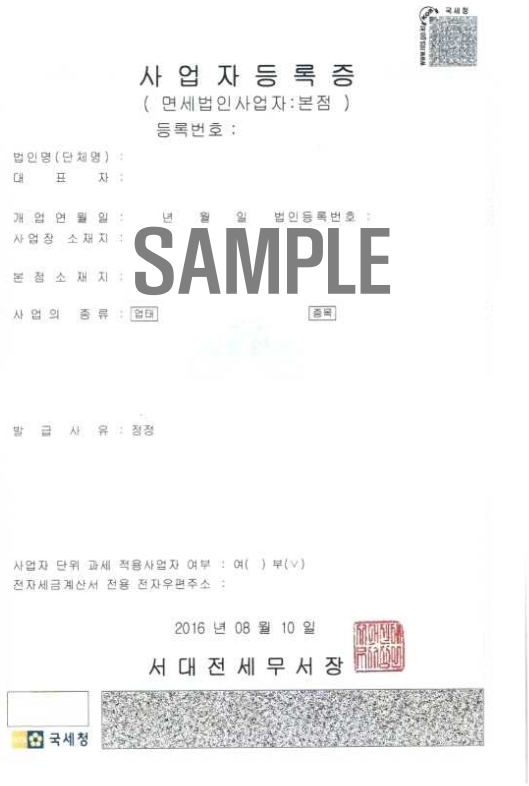

사 업 자 등 록 증
( 면세법인사업자:본점 )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개 업 연 월 일 :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본 점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종목
SAMPLE
발 급 사 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 년 08 월 10 일
서 대 전 세 무 서 장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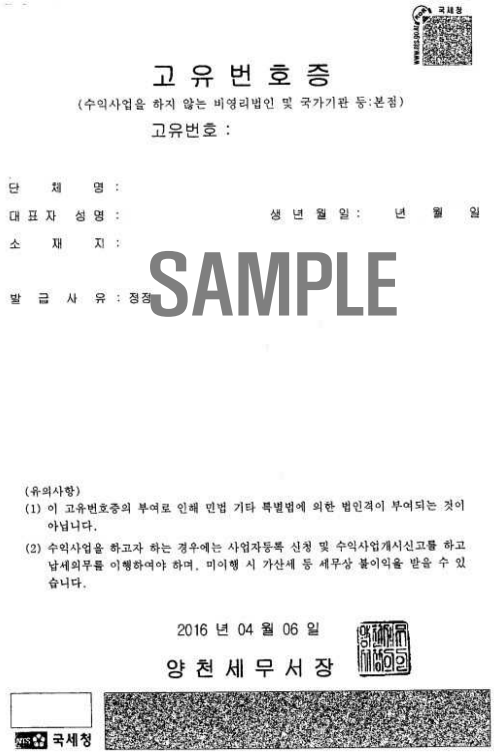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재 지 :
발 급 사 유 : 정정
SAMPLE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년 04 월 06 일
양 천 세 무 서 장
국세청

<증빙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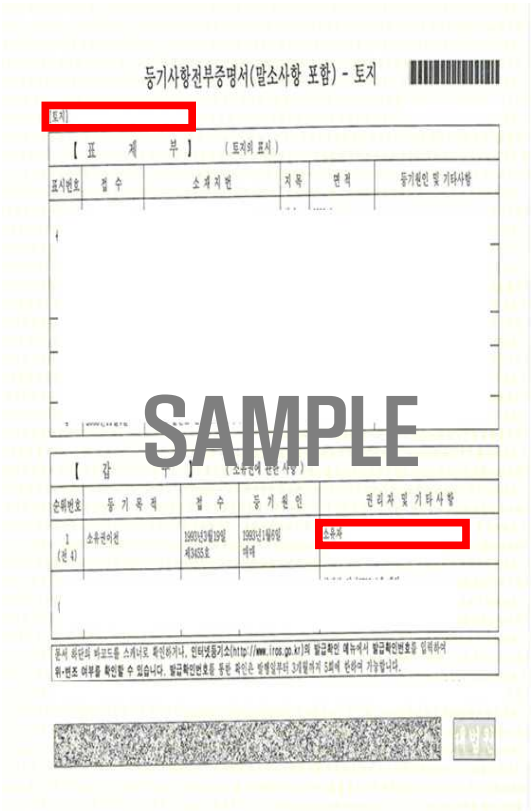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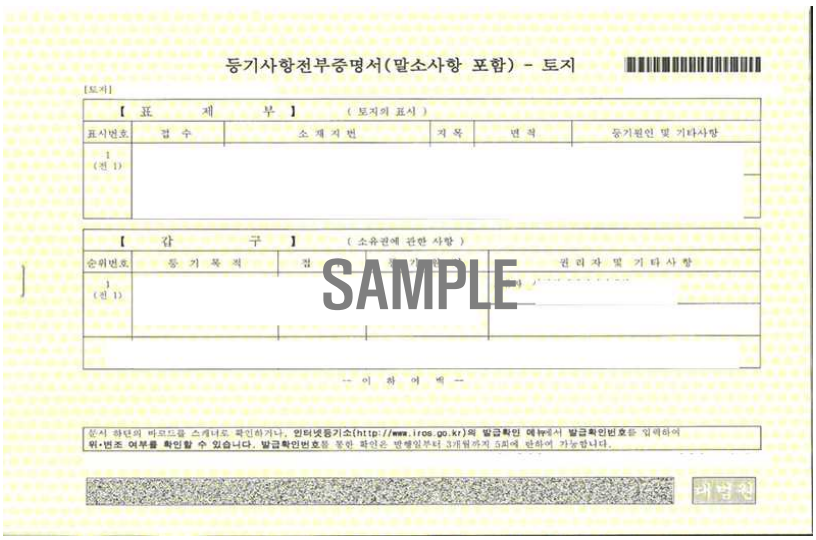


※ *사업제안서상의 대상지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법인의 토지에서 소유한 토지여야 함(개인 제외).*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영구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3 '19년도 나눔숲 · 나눔길 조성사업 평가우수 기관

| No. | 기관명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나눔길 |
| 2 | 강원도 철원군 | 나눔숲 |
| 3 | 충청남도 청양군 | 나눔숲 |
| 4 | 전라남도 여수시 | 나눔길 |
| 5 | 전라남도 무안군 | 나눔숲 |
| 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나눔길 |

※ 직제순 임

## 참고 4 '19년도 나눔숲 · 나눔길 사후관리 모니터링 우수 기관

| No. | 기관명 | 비고 |
|---|---|---|
| 1 | 서울광역시 광진구 | |
| 2 | 서울광역시 노원구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4 | 울산광역시 중구 | |
| 5 | 강원도 속초시 | |
| 6 | 강원도 홍천군 | |
| 7 | 경기도 광주시 | |
| 8 | 경기도 안양시 | |
| 9 | 경기도 평택시 | |
| 10 | 전라북도 임실군 | |
| 11 | 전라북도 정읍시 | |
| 12 | 경상남도 고성군 | |

※ 직제순 임

[양식 1]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토지영구사용 동의서

□ 토지현황

| 주 소 | 지 목 | 대장면적 (㎡) | 동의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토지에 있어 '21년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 선정 이후 무장애나눔길 토지로 영구 사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 소 유 자 | 사 용 자 |
|---|---|
| *주소*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기관명* (인) | *기관명* (인) |

[양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수집·이용 목적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정보제공 기간 |
|---|---|---|---|
| 산림청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성명, 직위, 부서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사무실전화번호, 모사전송(FAX)번호 | 동의일로부터 2021.12.31.까지 |

※ (동의거부 및 불이익 내용)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녹색자금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0 년 월 일

기관(시설)명: 성 명: (인/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